관세연구 21-03

www.kipf.re.kr

우즈베키스탄의 통관환경 연구

2021. 9

정재현 · 김미정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관세연구 21-03

www.kipf.re.kr

우즈베키스탄의 통관환경 연구

2021. 9

정재현 · 김미정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미 정 연구원

목 차

제1편 개관 ····· 11

Ⅰ. 일반 개황 ····· 11

Ⅱ. 경제 개황 ····· 14
1. 주요 경제 지표 ····· 14
가. 국제금융기구 지표 ····· 14
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보고서(2019~2023년) ····· 15
2. 우즈베키스탄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 19
가. 우즈베키스탄의 對세계 수출입 ····· 19
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수출입 ····· 20
3. 외국인 투자 동향 ····· 24
가. 개요 ····· 24
나. FDI 현황 ····· 25
다. 업종별 FDI 유치 비중 ····· 26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 28
1. 한-우즈베키스탄 수출입 동향 ····· 28
2.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관계 ····· 30
가. 협상 추진의 배경 ····· 30
나. 협상 의의 ····· 31

Ⅳ. 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현황 ····· 33

Ⅴ.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관련 교통물류 현황 ····· 35

제2편 통관제도 ····· 38

Ⅰ. 통관 관련 조직 및 관련 법 ····· 38
1. 통관조직 ····· 38
2. 통관 관련 법 ····· 40

Ⅱ. 관세 신고와 납부 ····· 45
1. 관세의 과세요건 ····· 45
가. 과세물건 ····· 45
나. 납세의무자 ····· 46
다. 과세표준 ····· 47
라. 관세율 ····· 47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 48
가. 신고 ····· 48
나. 납부 ····· 53
다. 관세 납부의 담보 ····· 55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55
가. 부가가치세 ····· 56
나. 소비세 ····· 59
다. 통관수수료 ····· 60

Ⅲ.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제도 ····· 62
1. 관세평가제도 ····· 62

가. 관세평가 ····· 62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 63
2. 품목분류제도 ····· 67
가. 품목분류 체계 ····· 67
나. 품목분류 사전결정 ····· 69

Ⅳ. 관세율제도 ····· 72
1. 관세율 종류 ····· 72
2. 세율 적용 우선순위 ····· 74
3. 관세율 수준 ····· 75
4. 관세율 구성 ····· 78

Ⅴ. 관세 감면 및 환급 ····· 79
1. 관세 감면제도 ····· 79
가. 관세법에 따른 감면 ····· 79
나. 결의안에 따른 감면 ····· 83
2. 관세 환급제도 ····· 84

Ⅵ. 원산지제도 ····· 87
1. 원산지결정 ····· 87
2. 원산지증명 ····· 88

Ⅶ. 보세제도 ····· 92
1. 개요 ····· 92
2. 보세창고 ····· 93
가. 세관보세창고 ····· 94
나. 자유보세창고 ····· 96

3. 면세점 ····· 97
4. 보세운송 ····· 98

Ⅷ. 수출입규제 ····· 100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100
가. 일반적인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100
나. 대통령령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103
2. 무역구제제도 ····· 105
가. 보호조치 ····· 105
나. 덤핑방지관세 ····· 107
다. 상계관세 ····· 109
3. 주요 인증제도 ····· 111
가. 개요 ····· 111
나. 표준청(Uzstandard) 인증 ····· 112
다. 적합성 인증(GOST UZ) ····· 118
라. 위생인증 ····· 121
마. 라벨링 ····· 125

Ⅸ. 행정구제제도 ····· 126
1. 개요 ····· 126
2. 행정구제제도 ····· 126
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의 보장 ····· 126
나. 세관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제기) ····· 128

Ⅹ. 벌칙 ····· 130
1. 개요 ····· 130
2. 관세행정벌의 종류 및 처분의 이행 ····· 131

가. 관세법상 규정된 관세행정벌 ····· 131
나. 행정책임법상 규정된 관세행정벌 ····· 131
다. 처분의 이행 ····· 139

제3편 수출입통관절차 ····· 141

Ⅰ. 수입통관절차 ····· 141
1. 개요 ····· 141
가. 수입통관절차상 특징 ····· 141
나.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 143
2. 수입통관절차 ····· 146
가. 수입신고 ····· 146
나. 물품 검사 ····· 148
다. 관세 납부 ····· 149
라. 물품 반출 ····· 150
3. 기타 통관절차 ····· 151
가. 국제 우편물 및 소포 ····· 151
나. 여행자 물품 ····· 152

Ⅱ. 수출통관절차 ····· 154
1. 개요 ····· 154
2. 수출통관절차 ····· 155
3. 기타 통관절차 ····· 156
가. 국제 우편물 및 소포 ····· 156
나. 여행자 물품 ····· 156

참고문헌 ····· 158

표 목차

〈표 1-Ⅱ-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 14
〈표 1-Ⅱ-2〉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 19
〈표 1-Ⅱ-3〉 2018~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상위 10개국 ····· 20
〈표 1-Ⅱ-4〉 2019~2020년 對CIS 회원국 수출입 현황 ····· 21
〈표 1-Ⅱ-5〉 2019~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출품목 ····· 22
〈표 1-Ⅱ-6〉 2019~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입품목(SITC 분류) ····· 23

〈표 1-Ⅲ-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현황 ····· 28
〈표 1-Ⅲ-2〉 2020년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10대 수출품목 ····· 29
〈표 1-Ⅲ-3〉 2020년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10대 수입품목 ····· 30
〈표 1-Ⅲ-4〉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일지 ····· 31

〈표 1-Ⅳ-1〉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관련 협정 현황 ····· 33

〈표 1-Ⅴ-1〉 2018년 기준 국가 물류경쟁력 지수(LPI) 현황 ····· 36

〈표 2-Ⅰ-1〉 우즈베키스탄 「관세법」의 구성 ····· 41
〈표 2-Ⅰ-2〉 보호조치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의 구성 ····· 43

〈표 2-Ⅱ-1〉 대통령령(UP-5777)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품목 ····· 57

〈표 2-Ⅱ-2〉 우즈베키스탄의 통관수수료 ····· 61

〈표 2-Ⅳ-1〉 우즈베키스탄의 관세율 종류 ····· 72
〈표 2-Ⅳ-2〉 특혜관세 적용 국가 ····· 75
〈표 2-Ⅳ-3〉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 76
〈표 2-Ⅳ-4〉 산업별 관세율 분포 ····· 76

〈표 2-Ⅶ-1〉 세관보세창고와 자유보세창고 ····· 94

〈표 2-Ⅷ-1〉 수출입 허가 및 계약 등을 규제받는 특정 품목 ····· 102
〈표 2-Ⅷ-2〉 대통령령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104
〈표 2-Ⅷ-3〉 의무 인증 대상 물품 목록 ····· 112
〈표 2-Ⅷ-4〉 위생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 122

〈표 2-Ⅹ-1〉 「행정책임법」상 규정된 관세행정벌 ····· 132

〈표 3-Ⅰ-1〉 수입통관절차에 따른 코드 분류 ····· 142
〈표 3-Ⅰ-2〉 임시통관을 거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 ····· 142
〈표 3-Ⅰ-3〉 수입통관 시 소요 시간과 비용 ····· 144
〈표 3-Ⅰ-4〉 우즈베키스탄의 터미널 코드 ····· 145

그림 목차

[그림 1-Ⅰ-1] 환율(SUM/USD) 추이 ····· 12

[그림 1-Ⅱ-1]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 ····· 15
[그림 1-Ⅱ-2] 주요 산업별 성장률 전망치 ····· 16
[그림 1-Ⅱ-3]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 ····· 17
[그림 1-Ⅱ-4] 무역 규모 전망치 ····· 18
[그림 1-Ⅱ-5]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치 ····· 19
[그림 1-Ⅱ-6]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FDI) 현황 ····· 26
[그림 1-Ⅱ-7] 업종별 외국인 투자(FDI) 유치 비중 ····· 27

[그림 2-Ⅰ-1]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조직도 ····· 40

[그림 2-Ⅲ-1] 우즈베키스탄 품목분류코드 확인 예시 ····· 69

[그림 2-Ⅳ-1] 기본관세율 및 추가세율 예시 ····· 73
[그림 2-Ⅳ-2] HS Code를 이용한 관세율 조회 ····· 78

[그림 2-Ⅵ-1]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 90

제1편 개관

I. 일반 개황[1)]

□ 정식 국가명칭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Republic of Uzbekistan)으로 수도는 타슈켄트 Tashkent)임

○ 1924년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 소련에 병합되었으나, 1991년 8월 31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현재의 국명으로 개칭함

□ 국토면적은 44만 4,474㎢로 한반도의 약 2배이며, 기후는 고온건조한 사막성 기후를 보임

○ 중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북쪽은 카자흐스탄, 동쪽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서남쪽은 투르크메니스탄, 남쪽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함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유일의 이중 육지 폐쇄국가[2)]로 물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인구는 2021년 7월 기준 약 3,056만명으로 세계 47위 수준이며,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보유국임

---

1)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uzbekistan/, 검색일자: 2021. 5. 3.

2)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2개 국가를 거쳐야 하는 국가

□ 공용어는 우즈베키스탄어(74.3%)이며, 이 외에도 러시아어(14.2%), 타지크어(4.4%), 기타(7.1%)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 정부형태는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를 채택하고 있음

○ 의회는 상·하 양원제이며, 주요 정당은 자유민주당, 국가재건당, 인민민주당 등이 있음

□ 종교는 이슬람교(88%), 러시아 정교(9%), 기타(3%)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이슬람교의 70%는 수니파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접 타지키스탄 ·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과격 시아파 원리주의 확산을 경계한다고 알려짐

□ 화폐단위는 숨(SUM)이며, 1994~2021년 기간 중 연평균 공식 환율(SUM/USD) 추이는 [그림 1-Ⅰ-1]과 같음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기준 1달러는 9,554숨에서 2021년 5월 3일 기준 1달러는 1만 523숨으로 상승함

[그림 1-Ⅰ-1] 환율(SUM/USD) 추이

(단위: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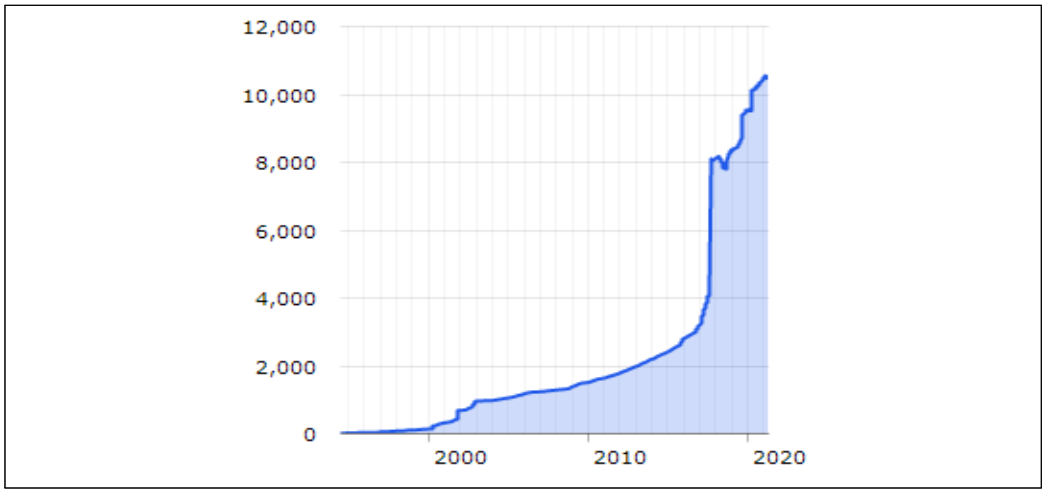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https://cbu.uz/oz/, 검색일자: 2021. 5. 3.

□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WTO 미가입국으로 WTO 가입을 재개하여 추진 중임[3)]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당시 WTO 가입 재개 의사와 우리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양국 간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력 약정을 체결함[4)]

3) WTO, "Uzbekistan resumes WTO membership negotiations," 2020. 7. 7,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acc_uzb_07jul20_e.htm, 검색일자: 2021. 5. 3.
4)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s://invest.gov.uz/mediacenter/news/washington-expressed-readiness-to-support-uzbekistan-s-accession-to-the-wto/, 검색일자: 2021. 7. 30.

Ⅱ. 경제 개황

1. 주요 경제 지표

가. 국제금융기구 지표

□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률은 2016년 6.1%로 2016~2020년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020년에는 1.6%로 크게 감소함

○ 명목 GDP는 2016년 817억달러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9~2020년에는 577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표 1-Ⅱ-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
경제성장률(%)	6.1	4.5	5.4	5.8	1.6
명목 GDP(십억 USD)[2)]	81.7	59.1	50.3	57.7	57.7
1인당 GDP(PPP, USD)	2,576	1,810	1,543	1,736	1,702
재정수지(GDP 대비, %)	1.6	1.8	1.7	-0.3	-3.3
소비자물가상승률(%)	9.8	19.8	14.3	15.2	11.1

주: 1) 추정치
2) 명목 GDP는 World Bank 자료를, 나머지 지표는 IMF 자료를 참고함

자료: IMF, *Republic of Uzbekistan:2019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and Staff Report*, Country Report No.19/129, 2019. 5, p. 22.; IMF, *Republic of Uzbekistan:2021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and Staff Report*, Country Report No.21/85, 2021. 4, p.24;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end=2020&locations=UZ&start=2016&view=chart, 2019, 검색일자: 2021. 7. 26.

○ 1인당 명목 GDP 또한 2016년 2,576달러에서 2020년 1,702달러 수준으로 감소함

○ 통합재정수지는 2016~2018년 기간 중 연평균 1.7% 수준에서 2019년 0.3% 적자로 전환 후 2020년 3.3% 적자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2016년 9.8%에서 2017년 19.8%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 11.1%로 감소함

나.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보고서(2019~2023년)

□ 2020년 11월 30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2019~2023년 기간 중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정 및 전망치를 수록한 보고서 *Budget for citizens 2021*를 발표함

○ 2021~2023년 국가재정전략, 2021년 국가 예산 구조, 국가채무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및 재정 현황을 분석함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2021년 연간 GDP 성장률을 5.1%로 전망함

○ 2020년에는 2019년 5.7%에 비해 크게 감소한 1~1.5%로, 2022~2023년에는 각각 5.8%와 5.4%로 예측함

[그림 1-II-1] 연간 GDP 성장률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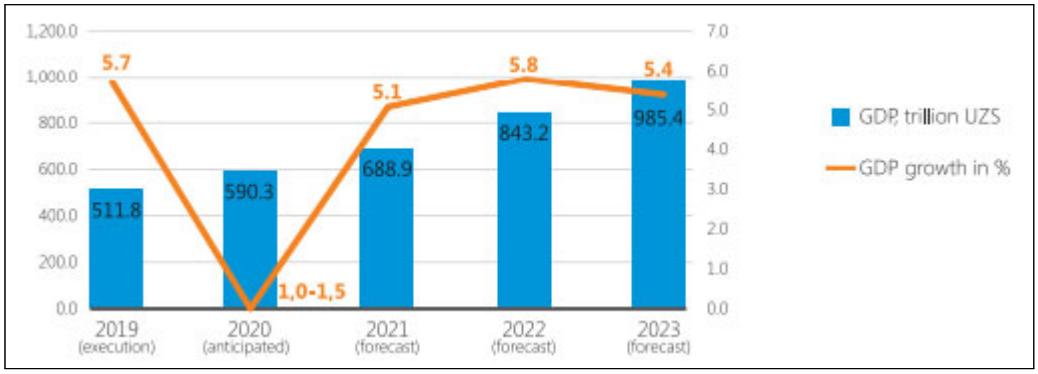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Budget for citizens 2021*, 2020. 11. 30., p. 7.

□ 주요 산업별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공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함

○ 공업의 경우 2019년 105%, 2020년 101.1~101.6%, 2021년 105.8%

○ 건설업의 경우 2019년 122.9%, 2020년 107~108%, 2021년 106.5%

○ 농수산업의 경우 2019년 103.1%, 2020년 102.7~103%, 2021년 102.7%

○ 서비스업의 경우 2019년 105.6%, 2020년 99.5~100%, 2021년 106.4%

[그림 1-Ⅱ-2] 주요 산업별 성장률 전망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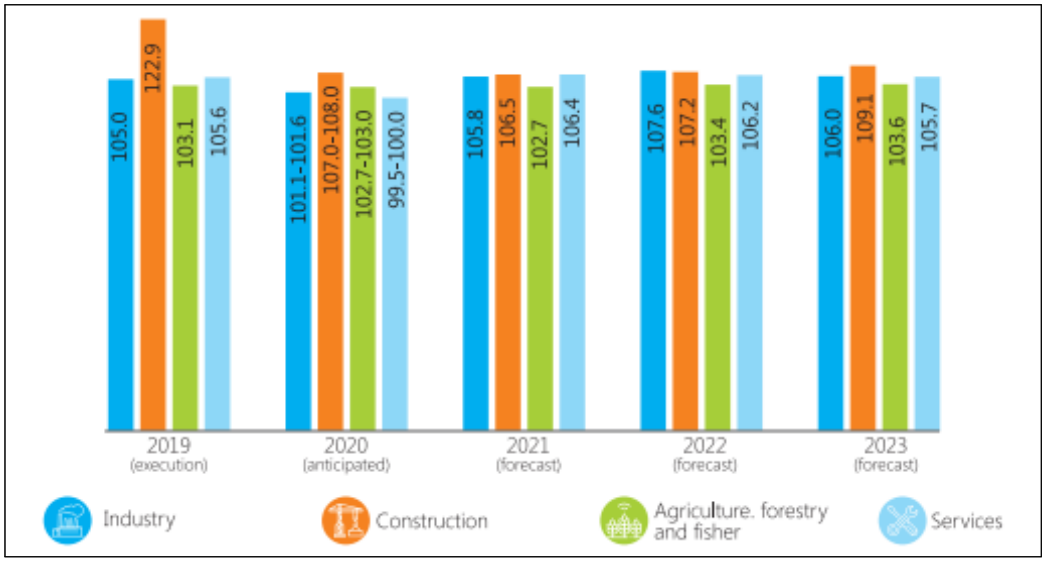

주: 전년도 수치를 100%로 표시함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Budget for citizens 2021*, 2020. 11. 30., p. 7.

□ 2019년 15.2%를 기록했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0년 11~11.5%에서 2021년 9~10%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 2021년의 경우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와 수입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둔화와 총수요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예측함

[그림 1-Ⅱ-3]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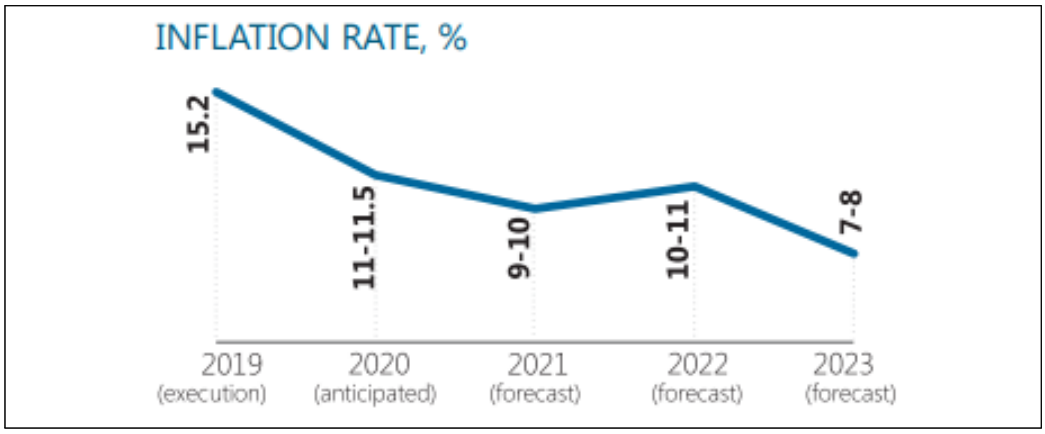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Budget for citizens 2021*, 2020. 11. 30., p. 8.

□ 대외무역은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에 대한 국경 폐쇄와 운송 및 물류 제한 그리고 기업 활동 중단 등으로 인해 2020년에는 수출입 모두 크게 감소하였음

○ 특히 천연가스와 구리를 포함한 원자재 수요와 가격의 감소로 인한 수출성장률이 크게 감소함

- 우즈베키스탄은 금, 천연가스, 면화 등의 1차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한편 2021년 대외무역량은 2019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럽 및 아시아시장 진출 등 수출지역의 확대와 운송비 보조금 제공 등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으로 수출촉진계획을 마련함

[그림 1-Ⅱ-4] 무역 규모 전망치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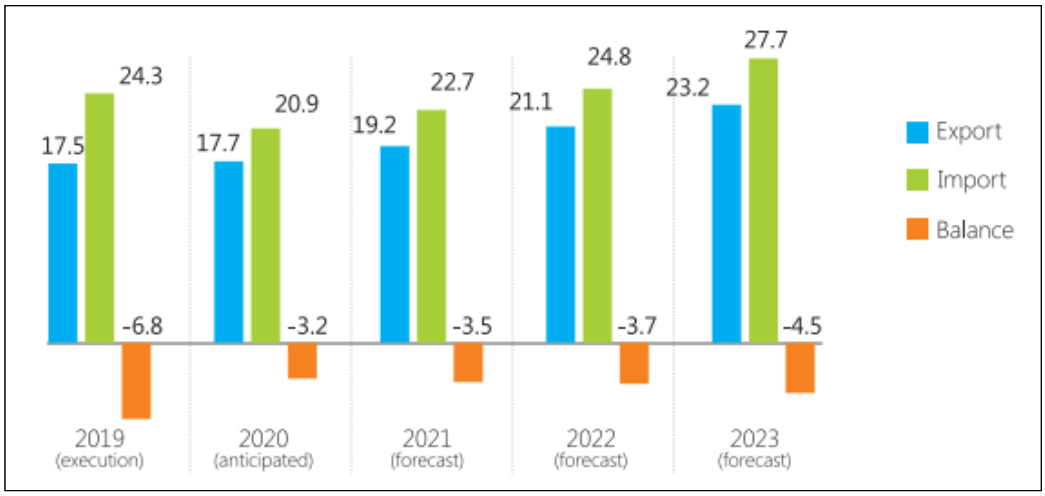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Budget for citizens 2021*, 2020. 11. 30., p. 8.

□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2019년 65억 1천만달러에서 2020년 66억 3천만달러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78억 199만달러로 증가를 예측함

○ 특히 2021~2023년 기간 동안 농업, 제조업, 인프라 분야에 집중될 것이며, 2019년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한 현지 생산을 위해 외국인의 현지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부과 확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완제품 판매 형태보다 현지 투자가 동반된 현지 생산방식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함

[그림 1-Ⅱ-5]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치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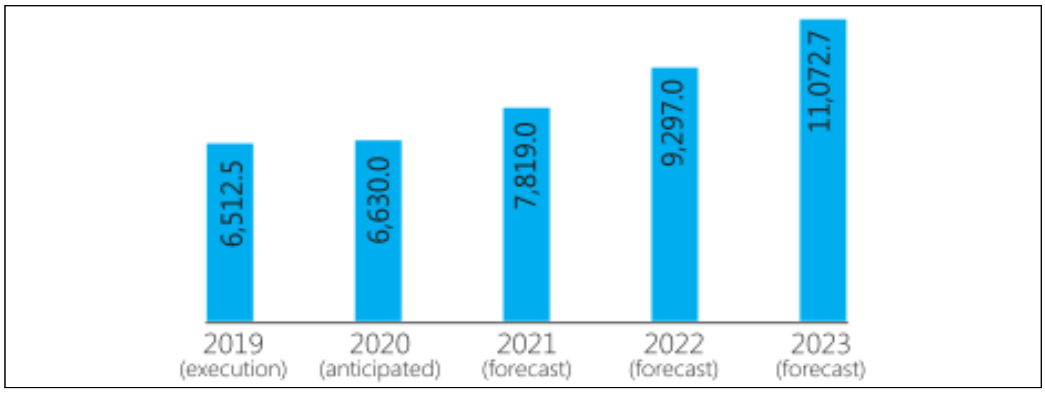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Budget for citizens 2021*, 2020. 11. 30., p. 9.

2. 우즈베키스탄의 對세계 수출입 동향

가. 우즈베키스탄의 對세계 수출입

□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규모는 2016~2019년 기간 중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총교역액은 전년 대비 13.1% 감소한 약 363억달러를 기록함

○ 2020년 수출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151억 2천만달러, 수입은 12.8% 감소한 211억 7천만달러, 무역수지 또한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약 60억 4천만달러를 기록함

〈표 1-Ⅱ-2〉 최근 5년간 우즈베키스탄의 對세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12,094.6	12,533.7	13,990.7	17,458.7	15,127,7
수입	12,137,6	14,012,4	19,439,2	24,292,3	21,171,5
무역수지	-43,0	-1,458,7	-5,448,5	-6,833,6	-6,043,8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https://www.stat.uz/en/official-statistics/merchandise-trade, 검색일자: 2021. 7. 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우즈베키스탄의 국가별 수출입

□ 최근 3년간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리나라, 터키 등이며, 이 중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2020년 기준 교역 규모는 64억달러 수준임

○ 그 외 키르기스스탄, 독일, 아프가니스탄, 체코,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있음

〈표 1-Ⅱ-3〉 2018~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달러)

구분	국가명		2018	2019	2020
1	중국	교역액	6,433.5	7,637.4	6,432.2
		수출	2,875.4	2,528.7	1,930.9
		수입	3,558.1	5,108.6	4,501.3
2	러시아	교역액	5,655.9	6,669.6	5,640.7
		수출	2,117.3	2,531.9	1,470.1
		수입	3,538.6	4,137.7	4,170.6
3	카자흐스탄	교역액	2,919.6	3,335.0	3,018.5
		수출	1,352.2	1,393.0	903.0
		수입	1,567.4	1,942.0	2,115.5
4	대한민국	교역액	2,159.1	2,767.7	2,142.4
		수출	108.7	102.9	45.5
		수입	2,050.5	2,664.8	2,096.8
5	터키	교역액	2,057.5	2,544.0	2,101.7
		수출	944.8	1,217.6	1,016.3
		수입	1,112.8	1,326.4	1,085.4
6	키르기스스탄	교역액	402.9	820.3	903.2
		수출	269.7	669.6	756.6
		수입	133.1	150.7	146.5
7	독일	교역액	778.7	989.8	829.0
		수출	53.7	62.2	70.5
		수입	725.0	927.5	758.5

〈표 1-Ⅱ-3〉의 계속

구분	국가명		2018	2019	2020
8	아프가니스탄	교역액	604.6	619.9	776.9
		수출	602.5	617.0	774.6
		수입	2.1	3.0	2.3
9	체코	교역액	70.1	182.6	532.6
		수출	5.8	16.4	32.5
		수입	64.4	166.2	500.1
10	투르크메니스탄	교역액	302.8	554.4	527.1
		수출	59.5	144.3	128.0
		수입	243.3	410.1	399.1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https://www.stat.uz/en/quarterly-reports/5868-2020, 검색일자: 2021. 7. 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 CIS 회원국과의 교역은 전년 대비 18.2% 감소한 118억 3천만달러(수출 41억 달러, 수입 77억 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81.3% 증가한 36억 1천만 달러를 기록

○ CIS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교역은 244억 3천만달러(수출 110억달러, 수입 134억 3천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9.6% 감소한 24억 4천만달러를 기록

〈표 1-Ⅱ-4〉 2019~2020년 對CIS 회원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9	2020
對CIS 회원국[1)]	교역액	14,461.8	11,826.4
	수출	6,234.0	4,106.4
	수입	8,227.8	7,720.0
	무역수지	-1,993.8	-3,613.6
對CIS 제외	교역액	27,289.2	24,429.6
	수출	11,224.7	10,995.8
	수입	16,064.5	13,433.8
	무역수지	-4,839.9	-2,437.9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https://www.stat.uz/en/official-statistics/merchandise-trade, 검색일자: 2021. 7. 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수출품목은 금이며, 전체 수출 규모에서 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8.2%에서 2020년 38.3%로 증가함

○ 그 외 주요 수출품목은 재료별 제조제품(19.2%), 식품 및 산동물(8.8%), 화학물 및 관련 제품(5.4%) 등임

〈표 1-Ⅱ-5〉 2019~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출품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출액		전년 대비		비중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합계	17,458.7	15,127.7	124.8	86.6	100.0	100.0
식품 및 산동물	1,436.4	1,336.3	139.5	93.0	8.2	8.8
음료 및 담배	29.8	27.1	133.7	91.0	0.2	0.2
비식용원재료 (연료 제외)	591.2	461.3	138.3	78.0	3.4	3.0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2,528.9	659.0	94.8	26.1	14.5	4.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12.4	26.9	190.5	2.2	0.1	0.2
화학물 및 관련 제품	836.5	820.6	94.9	98.1	4.8	5.4
재료별 제조제품	2,752.9	2,903.6	114.1	105.5	15.8	19.2
기계 및 운수장비	421.8	458.6	2.1	108.7	2.4	3.0
기타 제조제품	435.7	617.4	128.9	141.7	2.5	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4,978.2	5,813.1	169.4	116.8	28.5	38.4
- 그중 금(gold)	4,918.3	5,804.4	169.0	118.0	28.2	38.3
서비스	3,434.8	2,003.9	111.9	58.3	19.7	13.2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https://www.stat.uz/en/quarterly-reports/5868-2020, 검색일자: 2021. 7. 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 기준 최대 수입품목은 기계 및 운수장비이며, 전체 수입 규모에서 기계 및 운수장비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9.4%에서 2020년 37.6% 수준으로 소폭 감소함

○ 그 외 주요 수입품목은 재료별 제조품(16.9%), 화학물 및 관련 제품(13.7%), 식품 및 산동물(8.7%) 등임

〈표 1-Ⅱ-6〉 2019~2020년 우즈베키스탄의 수입품목(SITC 분류)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수입액		전년 대비		비중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합계	24,292.3	21,171.5	125.0	87.2	100.0	100.0
식품 및 산동물	1,608.5	1,851.3	121.0	115.1	6.6	8.7
음료 및 담배	44.0	49.3	183.4	112.1	0.2	0.2
비식용원재료 (연료 제외)	1,026.6	873.9	127.7	85.1	4.2	4.1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940.6	1,093.8	106.9	116.3	3.9	5.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279.6	297.2	132.1	106.3	1.2	1.4
화학물 및 관련 제품	2,687.5	2,903.8	126.1	108.0	11.1	13.7
재료별 제조제품	4,147.9	3,583.0	119.7	86.4	17.1	16.9
기계 및 운수장비	9,568.6	7,955.2	124.7	83.1	39.4	37.6
기타 제조제품	1,505.7	1,310.0	194.2	87.0	6.2	6.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57.4	37.7	2.8	65.7	0.2	0.2
서비스	2,425.9	1,216.4	114.1	50.1	10.0	5.7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https://www.stat.uz/en/quarterly-reports/5868-2020, 검색일자: 2021. 7. 2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외국인 투자 동향

가. 개요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1년 1월 '2021~2023년 우즈베키스탄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기존의 주요 투자대상인 원자재 부문 이외에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을 밝힘[5)]

○ 2021~2023년간 884억달러(928조 7천억숨) 이상 규모의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75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계획함

- 연도별 총투자규모 목표는 2021년 251조 800억숨, 2022년 309조 3,300억숨, 2023년 367조 9,300억숨이고,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목표는 2021년 76억 6천만달러, 2022년 93억달러, 2023년 110억 7천만달러로 예상함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무역 활성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 및 EU 등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6)]

○ 외화 자율화 조치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외화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해외차입 보증 비율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유치함

○ 아울러 사업규제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상법 법제화 준비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 중임

- 2021년 105개의 인허가 종목을 폐지한 바 있으며, 115개 종목의 인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

---

5)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invest.gov.uz/mediacenter/news/an-investment-program-for-the-next-three-years-was-adopted/, 검색일자: 2021. 7. 9.

6)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invest.gov.uz/mediacenter/news/an-investment-program-for-the-next-three-years-was-adopted/, 검색일자: 2021. 7. 9.

□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이후 경제자유화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하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옵저버 자격으로 가입하고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외환거래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해외 증권시장에 국채를 발행하는 등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나. FDI 현황

□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40% 감소하고 세계 무역 규모가 25% 감소한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67억달러로 전년도를 상회함[7)]

○ 이러한 지표는 건축 자재, 정보 통신, 전기, 화학, 경공업 생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실행과 섬유, 농업, 광업, 운송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정부의 투자프로그램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는 30억달러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한 67억달러를 기록함

7)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invest.gov.uz/mediacenter/news/preliminary-results-of-2020-and-tasks-for-2021-in-the-areas-of-investment-and-foreign-trade-were-discussed/, 검색일자: 2021. 7. 12.

[그림 1-Ⅱ-6]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FDI)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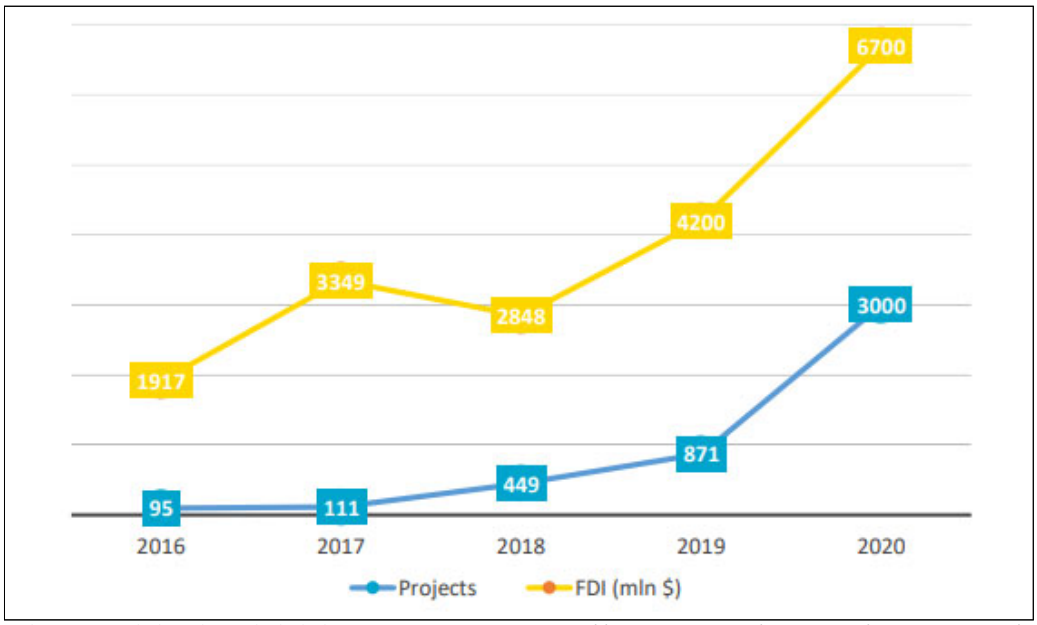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Presentations,” http://invest.gov.uz/category/mediacenter/publikatsii/, 검색일자: 2021. 7. 12.를 저자가 캡쳐함

다. 업종별 FDI 유치 비중

□ 2020년 3분기 기준 업종별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에 투자하는 비중은 총투자의 4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섬유(18%), 자동차(14%), 기타(12%), 화학(6%), 교육(2%) 순임

[그림 1-Ⅱ-7] 업종별 외국인 투자(FDI) 유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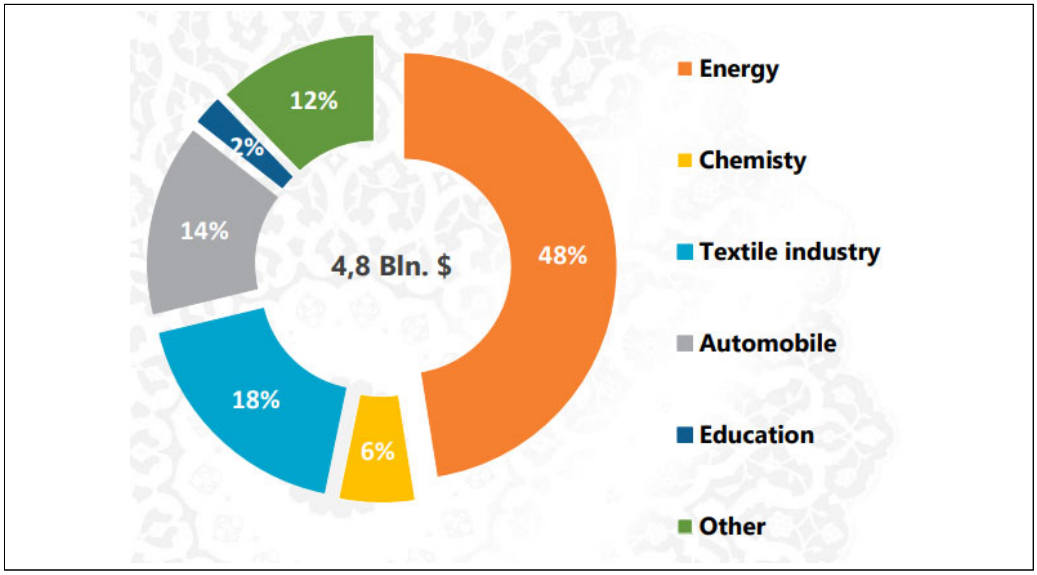

주: 2020년 3분기 기준
자료: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Presentations,” http://invest.gov.uz/category/mediacenter/publikatsii/, 검색일자: 2021. 7. 12.를 저자가 캡쳐함

Ⅲ.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

1. 한-우즈베키스탄 수출입 동향

□ 2020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의 제36위 교역국으로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약 17억 2,200만달러임

○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액은 약 17억 4백만달러이고 수입액은 약 1,800만 달러임

○ 기준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무역수지는 16억 8,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7.3% 감소함

□ 한편 최근 5년간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서 2020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표 1-Ⅲ-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증감률[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928	-27.8	1,180	27.2	2,117	79.4	2,338	10.4	1,704	-27.1
수입	21	28.7	18	-12.8	22	21.0	20	-10.1	18	-7.9
교역 규모	949	-27.0	1,198	26.2	2,139	78.5	2,358	10.2	1,722	-27.0
무역 수지	907	-28.5	1,162	28.1	2,095	80.3	2,318	10.6	1,686	-27.3

주: 1)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1. 9. 19.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10대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승용차, 기타 잡제품, 합성수지, 원동기, 건설중장비, 의자, 펌프, 카스테레오, 기타 기계류부품으로 조사됨

○ 제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반면, 제2위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전년 대비 52% 증가해 10대 수출품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표 1-Ⅲ-2〉 2020년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10대 수출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코드[1)]	품목명	2020	
			수출금액	증감률
1	7420	자동차부품	820,982	-0.7
2	7411	승용차	136,562	52.2
3	9990	기타 잡제품	98,035	6.7
4	2140	합성수지	64,721	4.7
5	7111	원동기	52,608	-1.5
6	7251	건설중장비	37,287	1.8
7	5121	의자	33,688	-11.3
8	7112	펌프	33,099	4.2
9	8223	카스테레오	24,610	3.1
10	7902	기타 기계류부품	24,223	-24.7

주: 1)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자: 2021. 7. 30.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10대 수입품목은 펄프, 순면직물, 식물성 한약재, 과실류, 면사, 천연섬유원료, 칼륨비료, 제어용케이블, 음료, 식물성액즙으로 조사됨

○ 주요 수입품목은 1차 생산품 및 기초 가공품 위주로 제1위 수출품목인 펄프는 전년 대비 30%, 제2위 수출품목인 순면직물 또한 전년 대비 15% 증가함

〈표 1-Ⅲ-3〉 2020년 우리나라의 對우즈베키스탄 10대 수입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코드[1]	품목명	2020	
			수입금액	증감률
1	2511	펄프	7,895	30.0
2	4331	순면직물	2,430	15.5
3	0156	식물성한약재	1,975	-17.5
4	0116	과실류	1,608	-7.3
5	4213	면사	1,119	-43.8
6	0191	천연섬유원료	930	-10.0
7	2330	칼륨비료	647	27.1
8	8421	제어용케이블	249	-
9	0159	음료	199	15.4
10	0134	식물성액즙	196	-

주: 1)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stat/cstat/peri/ctr/CtrItemList.screen, 검색일자: 2021. 7. 30.

2. 한-우즈베키스탄 교역관계[8]

가. 협상 추진의 배경

□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 STEP)[9]을 협상 중임

8) 한-우즈베키스탄 FTA 포털,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1/uz/5/1/, 검색일자 2021. 5. 18.
9)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공식명칭으로 'STEP(Agreement for Sustainable Trade and Economic Partnership)'에 합의

○ 2019년 4월 한-우즈베키스탄 FTA 경제적 공동연구 추진 MOU를 체결한 이후 2021년 1월 28일 한-우즈베키스탄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함[10)]

〈표 1-Ⅲ-4〉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일지

날짜	내용
2021. 4. 26.~28.	제1차 한-우즈벡 무역협정 협상 개최
2021. 1. 28.	한-우즈벡 무역협정(STEP) 협상 개시 선언
2020. 9.	국회보고 등 우리측 국내절차 완료
2020. 7.	공동연구 완료, 공청회 개최
2019. 4.	정상순방 계기 한-우즈벡 FTA 경제적 공동연구 추진 MOU 체결

자료: 한-우즈베키스탄 FTA 포털,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1/uz/1/, 검색일자 2021. 5. 18.

나. 협상 의의

□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무역협정으로 현재 신북방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없음[11)]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시장으로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뿐 아니라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무역협정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우리나라 기업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

○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면화, 금,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과 젊은 노동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을 뿐 아니라, 최근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함

10)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제191호, p. 4.
11) 신북방국가는 CIS 11개국과 몽골, 조지아를 말함

□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새로운 FTA 모델의 첫 번째 사례로서 지속가능한 무역·투자 협력모델임

○ 시장개방 이외 우리나라의 산업발전 및 FTA 추진경험 공유를 통해 개도국 경제성장 기여 및 경제협력관계 강화 추진을 목표로 함

○ 예를 들어 세계 5대 면화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의 섬유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섬유 원부자재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ODA를 통해 구축한 섬유 테크노파크를 활용하여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섬유기업 투자진출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12)]

□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다각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적인 관계이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산업 및 기반 시설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선도적인 기술 파트너라고 함[13)]

○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함

12)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양국의 지속가능한 섬유산업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2015~2019년 ODA 지원을 통해 2019년 9월 개소

13) *Uzdaily,* "South Korea to expedit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Uzbekistan," 2021. 1. 12, https://www.uzdaily.uz/en/post/62964, 검색일자: 2021. 7. 16.

Ⅳ. 우즈베키스탄의 무역협정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독립 이후 총 11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주로 구소련 또는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회원국과 1990년대에 체결된 협정이 대다수임

○ 이 중 3건은 단순 교역협정 또는 경제협력관계 체결이며, 8건은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임

〈표 1-Ⅳ-1〉 우즈베키스탄의 무역 관련 협정 현황

협정의 종류	대상국	일자	
		체결일	발효일
교역협정	러시아	1992. 11. 13.	1993. 03. 25.
교역협정	벨라루스	1993. 01. 21.	1994. 12. 19.
FTA	우크라이나	1994. 12. 29.	1996. 01. 01.
FTA	몰도바	1995. 03. 30.	1995. 08. 29.
FTA	조지아	1995. 09. 04.	2010. 10. 15.
FTA	타지키스탄	1996. 01. 10.	1996. 06. 28.
경제협력관계	투르크메니스탄	1996. 01. 16.	1998. 03. 06.
FTA	아제르바이잔	1996. 05. 27.	1996. 11. 02.
FTA	키르기스스탄	1996. 12. 24.	1997. 04. 01.
FTA	카자흐스탄	1997. 06. 02.	1998. 05. 16.
자유무역 프로토콜	독립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FTA, CIS FTA)[1)]	2011. 10. 18.	2012. 09. 20.

주: 1) 9개 국가(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에서 발효, 2개 국가(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협상이 진행 중임

자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bukbang.go.kr/bukbang/info_data/pds/0001/?boardId=bbs_0000000000000013&mode=view&cntId=970, 검색일자 2021. 5. 21.

□ CIS 회원국과 체결한 다자간 FTA 및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자유무역 프로토콜'에 근거해 CIS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협정내용은 전반적으로 상품, 통관, 관세협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투자, 인력, 무역규제, 기술장벽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정 수준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16년 12월 대외개방 확대를 중장기 국가정책으로 표방하면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가입을 추진 중임

○ EAEU는 역내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역내 관세동맹과 소비세 규정, 인증 규정 등의 각종 시장 보호 정책의 완화 및 통폐합을 추구함

○ 2014년 5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정상이 EAEU 창설 협정에 서명, 2015년 1월 아르메니아가 추가되어 4개국 체제로 출범, 2015년 12월 키르기스스탄이 추가로 가입했고 2018년 4월 몰도바가 옵서버 지위로 가입하여 2021년 현재 6개 국가가 소속됨

□ 우즈베키스탄은 1994년 12월 WTO 가입을 신청한 이래, 무역 관련 국내 법령이 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제·개정하고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 WTO 회원국과 양자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음[14)]

○ 2018년 2월 28일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인 합리화를 위한 조직적 조치」에 따라 대외경제활동을 위한 관세 납부 최적화 및 관세, 세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함

14) WTO, https://www.wto.org/english/news_e/news20_e/acc_uzb_07jul20_e.htm, 검색일자: 2021. 6. 7.

V.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관련 교통물류 현황

□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이 갖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수입화물의 대부분은 철도와 도로를 통한 육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는 총길이 6,020km 중 실제 이용구간이 4,230km로, 모든 운송수단의 총화물 취급량(톤-킬로미터 기준)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54%이며, 수입의 96%, 수출의 90%가 철도 운송으로 진행됨[15)]

□ 우리나라는 유라시아의 동단에 위치하고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극히 적은 양을 차지하는 항공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운을 중심으로 국제운송체계가 이루어져 있음[16)]

○ 해운은 목적지까지의 주요 수송모드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운중심과 육운(철도 또는 도로) 중심 수송체계로 나눌 수 있음

○ 육운중심 경로는 지역에 따라 북부노선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경로와 남부에 있는 중국횡단철도(TCR) 경로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육상운송은 일반적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하고 있음[17)]

○ TSR을 통한 구간은 부산→블라디보스토크→노보시비르스크→타슈켄트이며, TCR은 중국을 경유하는 노선임

---

15) 국토교통부 해외철도정보, http://www.kric.go.kr/jsp/industry/glp/country_MarketInDetail.jsp?menuId=M01040201&board_seq=8099&pageNo=1&q_region=A020150003&q_cnty=A010110131&q_cnty_name=&q_value=&q_name=, 검색일자: 2021. 7. 30.

16) 서종원·예충열·이태형·이호·한은영·김용진·박민철,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6. 11, p. 93.

17) 서종원·예충열·이태형·이호·한은영·김용진·박민철,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6, p. 113.

□ 〈표 1-V-1〉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한 2018년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로 우즈베키스탄은 160개국 가운데 제99위로 조사됨[18)]

○ LPI의 주요 항목은 통관, 물류시설, 국제수송, 물류경쟁력, 화물추적, 정시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됨

○ 우즈베키스탄의 물류환경은 전반적으로 최하위권 수준을 보이는데, 특히 통관의 경우 제140위로 가장 취약한 항목으로 보임

〈표 1-V-1〉 2018년 기준 국가 물류경쟁력 지수(LPI) 현황

Country	LPI		Customs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shipments		Logistics competence		Tracking & tracing		Timeliness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Germany	1	4.2	1	4.09	1	4.37	4	3.86	1	4.31	2	4.24	3	4.39
Japan	5	4.03	3	3.99	2	4.25	14	3.59	4	4.09	10	4.05	10	4.25
Singapore	7	4	6	3.89	6	4.06	15	3.58	3	4.1	8	4.08	6	4.32
Denmark	8	3.99	4	3.92	17	3.96	19	3.53	9	4.01	3	4.18	2	4.41
United Kingdom	9	3.99	11	3.77	8	4.03	13	3.67	7	4.05	4	4.11	5	4.33
Hong Kong	12	3.92	9	3.81	15	3.97	8	3.77	12	3.93	15	3.92	15	4.14
United States	14	3.89	10	3.78	7	4.05	23	3.51	16	3.87	6	4.09	19	4.08
Korea, Rep.	25	3.61	25	3.4	22	3.73	33	3.33	28	3.59	22	3.75	25	3.92
China	26	3.61	31	3.29	20	3.75	18	3.54	27	3.59	27	3.65	27	3.84

18)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2년마다 160여 개국을 대상으로 물류성과지수(LPI)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4년, 2016년, 2018년의 3개년 물류성과지수 제1위는 독일임

〈표 1-Ⅴ-1〉의 계속

Country	LPI		Customs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shipments		Logistics competence		Tracking & tracing		Timeliness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Rank	Score
Kazakhstan	71	2.81	65	2.66	81	2.55	84	2.73	90	2.58	83	2.78	50	3.53
Russian Federation	75	2.76	97	2.42	61	2.78	96	2.64	71	2.75	97	2.65	66	3.31
Uzbekistan	**99**	**2.58**	**140**	**2.1**	**77**	**2.57**	**120**	**2.42**	**88**	**2.59**	**90**	**2.71**	**91**	**3.09**
Kyrgyz Republic	108	2.55	55	2.75	103	2.38	138	2.22	114	2.36	99	2.64	106	2.94
Moldova	116	2.46	124	2.25	141	2.02	90	2.69	122	2.3	142	2.21	82	3.17
Turkmenistan	126	2.41	111	2.35	117	2.23	136	2.29	120	2.31	107	2.56	130	2.72
Tajikistan	134	2.34	150	1.92	127	2.17	133	2.31	116	2.33	131	2.33	104	2.95
Afghanistan	160	1.95	158	1.73	158	1.81	152	2.1	158	1.92	159	1.7	153	2.38

자료: Wor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2018, p. 47.

제2편 통관제도

Ⅰ. 통관 관련 조직 및 관련 법

1. 통관조직

□ 우즈베키스탄은 관세위원회(State Customs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에서 통관 관련 행정을 관할함[19)]

○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내각에 소속됨

□ 주요 목적은 세관감독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감독과 「관세법」 준수에 대한 감독 등임[20)]

○ 관세 지불의 적시성 및 정확성 보장

○ 경제정책 조치 및 관세제도의 준수 보장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억제 및 예방

□ 상기 목적 이외에도 국가안보, 공공질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행 지원과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21)]

---

19)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는 국가관세위원회라고도 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세위원회로 사용함
20) 「관세법」 제6조
21) 「국가관세위원회법」 제8조

□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22)]

○ 법인 및 자연인의 권리 및 법률로 보장되는 이익의 보호

○ 우즈베키스탄 경제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세관 감독 및 통관 이행

○ 관세의 부과

○ 「관세법」 준수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밀수 등의 법률 위반 방지

○ 대외무역관리 감독, 대외무역관리 일부로 세관과 관련된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등

○ 위험관리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감독

○ 최신 정보통신기술 관련 관세 문제의 개발 등

○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의 이행을 보장

□ 관세당국은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권한이 있음[23)]

○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 및 운송수단을 검사할 권한

○ 검사를 위해 물품 및 운송수단, 필요한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권리

○ 금융기관과 법인 및 자연인으로부터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세관감독을 목적으로 물품의 샘플을 채취할 권리

○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세법」 위반에 대한 물품을 검사하고 법인 및 자연인에게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 「관세법」 위반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권한

○ 우즈베키스탄에서 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물품 및 불법적으로 제조된 제품이 수입, 중개되거나 보관중인 경우 물품의 몰수에 대한 결정

○ 기타 범죄자에 대한 행정적 구금, 특별 허가 및 면허 발급, 세관 활동과 관련하여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감독 수단을 적용, 「관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 참여, 세관의 활동을 개선을 위한 제안 등

---

22) 관세위원회, https://bojxona.uz/en/lists/view/85, 검색일자: 2021. 6. 2.
23) 「국가관세위원회법」 제7조

[그림 2-ㅣ-1]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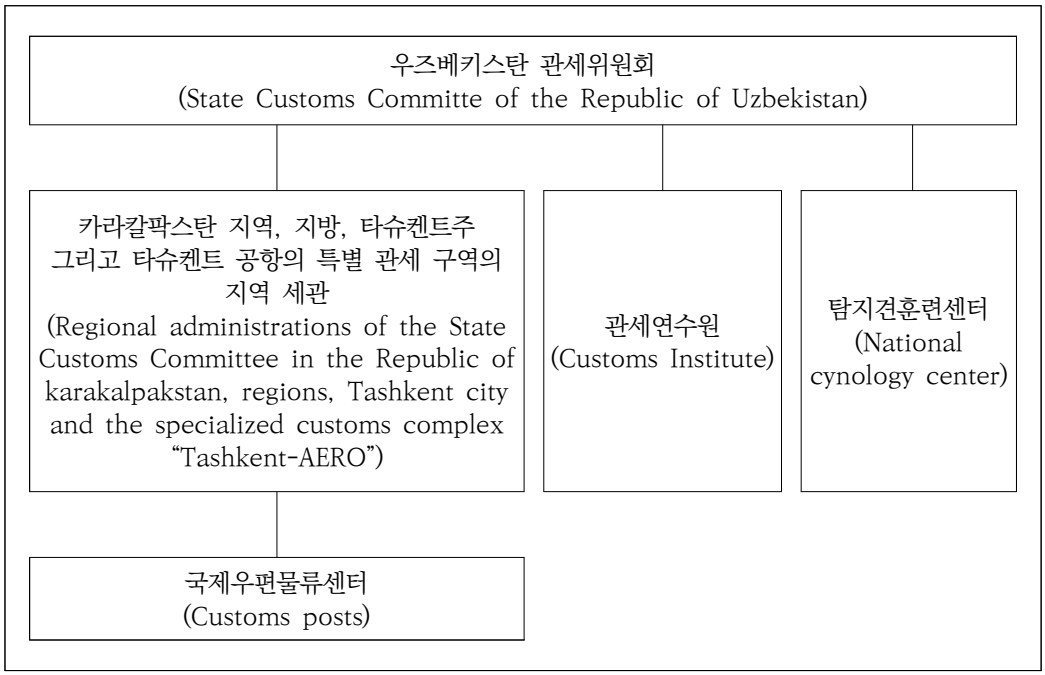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https://www.customs.uz/en/lists/view/88, 검색일자: 2021. 6. 14.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통관 관련 법

□ 통관 관련 법은 「관세법(ТАМОЖЕННЫЙ КОДЕКС)」을 기본으로 하며, 동법은 총 12개 부(Section), 59개 장(Chapter)으로 구성됨

○ 1997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20일 「관세법」 개정에 따라 국제 통관기준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통관 절차와 정책을 규정함[24)]

24)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A%25B4%2580%25EC%2584%25B8&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UZ&pageIndex=1&CTS_SEQ=37990&AST_SEQ=319&ETC=5, 검색일자: 2021. 5. 31.

-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 관련 서류의 발부와 처리에 소요되는 기한을 대폭 단축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
- 운송수단 및 파이프라인·송전라인을 통한 제품의 국경 간 이동 절차 관련 규정도 새로 정비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통관검사 규정을 도입

○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세관 기관 및 대외경제활동 참여자들 간 양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규정을 도입

〈표 2-Ⅰ-1〉 우즈베키스탄 「관세법」의 구성

Section	Chapter
제1부 일반조항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규정
	제3장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 이동
제2부 관세제도	제4장 총칙
	제5장 수출
	제6장 재수출
	제7장 임시수출
	제8장 관세영역 외 가공
	제9장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수입)
	제10장 재수입
	제11장 임시통관
	제12장 관세영역 내 가공
	제13장 일시장치
	제14장 세관보세창고
	제15장 자유보세창고
	제16장 관세자유지역
	제17장 면세점
	제18장 보세운송
	제19장 폐기
	제20장 국익을 위한 포기
	제21장 세관의 감독을 받는 종류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

〈표 2-ㅣ-1〉의 계속

Section	Chapter
제3부 차량 및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제도	제22장 상업용 차량의 이동
	제23장 비상업용 차량 및 물품의 이동
	제24장 국제우편 및 우편물
	제25장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에 의한 운송 물품
	제26장 보세창고 및 면세점
제4부 세관감독	제27장 총칙
	제28장 시행 양식 및 절차
	제29장 위험관리시스템
	제30장 세관검사
	제31장 세관감독하에서의 물품 및 운송수단의 운송
	제32장 세관의 감독(호송)을 받는 종류의 물품 운송에 대한 허가
	제33장 세관 운송인의 활동
제5부 외환 및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제34장 외환관리
	제35장 대외무역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제6부 통관	제36장 총칙
	제37장 신고
	제38장 물품 및 운송수단의 반출
제7부 신고인, 통관업 종사자	제39장 신고인
	제40장 관세사
	제41장 통관전문가
제8부 관세 납부	제42장 총칙
	제43장 관세 지불금 납부 및 특혜관세
	제44장 관세 지불금의 산출
	제45장 관세 지불금의 계산 및 납부절차
	제46장 관세 지불금의 조건 및 절차
	제47장 관세 지불금 납부 보장
	제48장 관세 지불금 체납
	제49장 관세 지불금 환급
	제50장 원산지결정
	제51장 품목분류
	제52장 품목분류 사전심사

〈표 2-ㅣ-1〉의 계속

Section	Chapter
제9부 통계, 정보 및 통신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제53장 관세당국의 통계 관리
	제54장 관세 정보 및 통신기술
	제55장 통지 및 자문
	제56장 지식재산권 대상에 대한 보호
제10부 특정 범주의 외국인에 대한 관세 특혜	제57장 외국 대표부 및 그 직원에 대한 관세 특혜
	제58장 그 밖의 외국인에 대한 관세 특혜
	제59장 외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관세 특혜
제11부 통제운송	통제운송
제12부 최종조항	최종조항

자료: 「관세법」(러시아어본, 2019. 2. 19. 최종 업데이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관세법」과 별도로 「보호조치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 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을 두고 있음

○ 동법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조사의 실시, 종결 규정의 내용을 규정함

〈표 2-ㅣ-2〉 보호조치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의 구성

Chapter	
제1장	총칙
제2장	보호조치
제3장	덤핑방지관세
제4장	상계관세
제5장	조사의 실시
제6장	종결 규정

자료: 「보호조치 덤핑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그 외에도 「국가관세율법(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국가관세위원회법(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И ДОПОЛНЕНИЙ В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АМОЖЕННОЙ СЛУЖБЕ)」 등이 있음

○ 「국가관세율법」은 우즈베키스탄 관세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의 내용을 규정함

○ 「국가관세위원회법」은 우즈베키스탄 관세당국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의 내용을 규정함

Ⅱ. 관세 신고와 납부

1. 관세의 과세요건

가. 과세물건

□ 우즈베키스탄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거나 관세체제가 변경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은 세관에 신고해야 함[25)]

○ 상기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거나 관세체제가 변경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은 그것이 해당되는 관세체제를 따름[26)]

1) 수출
2) 재수출
3) 임시 수출
4) 관세영역 외 가공
5)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수입)
6) 재수입
7) 임시 수입
8) 관세영역 내 가공
9) 임시 보관
10) 보세창고

---

25) 우즈베키스탄 「관세법」상 관세체제(Customs regimes)는 관세제도를 의미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
26) 「관세법」 제25조

11) 세관창고
12) 관세자유지역
13) 면세점
14) 통과
15) 폐기
16) 국익을 위한 포기

○ 한편 신고자는 물품 및 운송수단의 성격, 수량, 원산지 또는 용도와 무관하게 어떠한 체제든지 그것을 선택하거나 다른 체제로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선택한 관세체제는 통관을 위해 세관신고서를 통해 세관에 제출됨[27]

나. 납세의무자

□ 우즈베키스탄 「관세법」 제295조에 따라 관세는 신고인이 납부하고 모든 관계자는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납부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신고인임을 명시함

○ 신고인이란 자신의 명의로 물품 및 운송수단을 신고·제출·제시하는 자 또는 이를 대신하는 통관대행업자를 말함[28]

○ 신고인의 요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법인 및 개인, 외국인이 될 수 있으며, 운송인 또는 통관대행업자가 될 수 있음[29]

□ 이와 관련하여 물품 및 운송수단을 신고하는 때의 신고인의 관세 신고·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0]

○ 이 법전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신고를 실시하고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함

---

27) 「관세법」 제26조
28) 「관세법」 제15조
29) 「관세법」 제274조
30) 「관세법」 제276조

○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관세를 지불함
○ 세관의 요구에 따라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세관에 신고된 물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함

다. 과세표준

□ 관세 및 소비세 등 관련 제세를 산출하는 기준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임[31]
○ 부가가치세 산출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은 관세가 부가되는 물품의 통관가격으로 납부해야 하는 가격이 되고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 납부할 소비세도 합산됨

라. 관세율

□ 특정 재화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우즈베키스탄 「관세법」과 「관세율법」에 근거하고 있음

□ 관세율은 세관에서 세관신고를 수락한 날 또는 관세위원회에서 관세의 납부에 대한 조치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됨[32]
○ 관세율은 우즈베키스탄 내각에서 정함[33]

□ 관세율의 종류는 관세의 산출 방법에 따라 종가관세와 특정 관세 그리고 혼합세로 구분됨[34]
○ 수입물품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수입관세는 종가관세의 경우 과세대상 물품의

31) 「관세법」 제322조
32) 「관세법」 제324조
33) 「관세법」 제291조
34) 「관세법」 제293조

과세가격에 대한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 단위 또는 1kg당 정해진 금액으로 표현되는 특정 관세의 경우 과세대상 물품의 단위당 지정된 요율로 부과되는 기준으로 산정함

○ 혼합세의 경우 종가관세와 특정 관세 중 더 큰 것으로 표시되거나 결합하여 산정함

2. 관세의 신고와 납부

가. 신고

□ 우즈베키스탄은 「관세법」상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거나 관세체제가 변경되는 물품 및 운송수단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음[35]

1) 일반적인 세관신고

가) 신고 장소

□ 모든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물품은 물품의 통관이 진행되는 국경세관에 신고하고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은 물품과 동시에 신고함[36]

○ 세관은 법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신고는 특정 세관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문화재, 무기, 군수용품 및 탄약, 방사성 물질 등의 통관을 위해 특수 장비 또는 특수 지식 등이 필요한 경우

35) 「관세법」 제252조
36) 「관세법」 제253조

- 물품의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차량, 항공기, 철도, 선박,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
- 「관세법」 등에 반복하여 위반의 대상이 된 특정 유형의 물품
- 지식재산권이 보호대상 물품

○ 물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물품과 동시에 신고됨

○ 짐이 없는 운송수단 및 승객을 운반하는 운송수단은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는 때에 신고됨

○ 선박, 운하용 선박 및 항공기는 관세영역 내 도착 항구 또는 공항이나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으로부터의 출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신고됨

나) 신고 형식과 세관신고서

□ 신고는 물품 및 운송수단이 적용되는 관세체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그 밖에 관세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일정한 형식(구두, 서면, 전자)에 따라 이루어짐[37]

□ 세관신고서는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이며, 세관신고서상 기재되는 정보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 통계의 생성 및 「관세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한정함

○ 신고서가 세관이 수행하는 통화 감독 목적의 회계 문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정보도 신고서에 명시되어야 함[38]

○ 신고서의 양식과 신고서에 명시되는 정보 목록은 관세위원회에서 정함

□ 세관신고서는 세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간은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신고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39]

○ 자연인이 관세선을 통과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휴대 수하물 및 동반 수하물 안에

37) 「관세법」 제254조
38) 「관세법」 제255조
39) 「관세법」 제261조

담아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세관신고서는 물품의 제시와 동시에 신고된 것으로 봄

○ 관세영역으로 반입되는 운송수단은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한 후 적어도 3시간 이내에 신고되어야 하며, 반출되는 운송수단의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기 전 3시간 이내에 신고되어야 함

2) 사전 면장신고

□ 사전 면장신고는 물품이 관세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적용할 수 있음[40)]

○ 신고인은 선적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 화물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된다는 사전 면장을 도착항이나 국경세관에 제출함

○ 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은 사전 신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신고를 승인한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

□ 사전 면장신고는 사전에 서류 제출과 관세 및 제세 납부 등의 주요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수입 후 원본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식임

○ 다만 실무에서는 사전 신고 내용과 실제 도착하는 화물의 중량, 포장, 특성 등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경우 오히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 제도라고 알려짐

3) 단순 화물신고

□ 단순(간단) 화물신고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특정 통관체제에 두기 전에 적용할 수 있음[41)]

○ 단순 화물신고서는 운송인 또는 신고인이 물품 및 운송수단을 신고함과 동시에 제출하거나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 및 운송수단의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40) 「관세법」 제262조
41) 「관세법」 제267조

○ 운송서류 및 상업서류는 국제운송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외국어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여 다음의 정보를 명시한 운송서류 및 상업서류가 사용될 수 있음
- 운송서류에 따른 물품 발송인(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 물품의 출발 국가 및 도착 국가
- 물품명
- 총/순중량(kg) 또는 부피를 포함한 물품의 수량
- 포장의 수, 포장 및 라벨링의 설명
- 인보이스상 표시된 물품가격
- HS 코드(TN VED) 6단위

□ 단순 화물신고는 주로 운송사 또는 이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보세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하여 경유 또는 도착 국가 영내에 세관신고를 하는 것으로, 트럭 또는 기차와 같이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보세상태의 신고 방식임

○ 최종 도착 전 경유 국가의 세관신고 내역은 최종 도착 후 세관신고 내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다만 운송 중 경유 국가에서 세관신고 시 서류의 변경 및 그에 준하는 서류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경 작업이 많고 혼선도 많은 것으로 알려짐

4) 임시화물 세관신고[42)]

□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넘어 이동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임시화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물품을 사전 신고할 수 있음

○ 세관이 정한 기간 내에 물품이 이동되어야 하고 신고인은 임시화물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42) 「관세법」 제268조

5) 불완전한 세관신고[43]

□ 신고인이 해당물품을 식별할 수 있으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없는 경우 불완전한 화물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불완전한 화물신고는「관세법」제22조(조건부반출)의 'c', 'e' 및 'f'에 명시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음

- (c) 기존의 과세가격 결정에 따른 관세 납부
- (e) 필요서류 및 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f) 관세 납부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제공과 함께 자유유통을 위한 관세면세제도에 따라 발행

□ 신고인은 상기 신고서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여 완전한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6) 정기세관신고[44]

□ 정기세관신고는 물품의 HS 코드(TN VED) 10단위에 따른 원산지, 물리적 특성, 품질, 제조사 및 제품 코드가 동일한 물품을 동일인이 정기적으로 통관하는 경우 사용함

□ 1인의 동일한 자가 1개의 동일한 물품 및 운송수단을 정기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세관은 일정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하여 이동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하여 1개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조치는 물품의 임시 보관 기한을 위반하거나 관세 납부기한을 위반할 수 없음

---

43)「관세법」제269조
44)「관세법」제270조

나. 납부

1) 관세의 납부 조건 및 절차

□ 우즈베키스탄 「관세법」상 '관세지불금(Таможенные платежи)'이라는 용어는 관세(таможенная пошлина)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관세로 사용함

□ 관세는 다음과 같이 「관세법」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또는 동시에 납부함[45]
- ○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에 의한 운송 물품의 경우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날
- ○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불법적으로 운송된 물품의 경우 관세국경을 통과한 날 또는 세관이 정하는 날
- ○ 관세의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의 경우 정해진 납부 마감일
- ○ 통관과 관련 없는 관세의 경우 세관이 관련 조치나 절차를 수행하기 전
- ○ 한편 이러한 관세의 납부 기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관세는 「관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 국가화폐로 세관에 납부함[46]

□ 세관의 결정에 따라 납부자는 관세의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음[47]
- ○ 관세의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45) 「관세법」 제327조
46) 「관세법」 제328조
47) 「관세법」 제329조

○ 생산기업의 경우 수출생산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자재-기술 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유예가 이자의 징수 없이 90일의 기간으로 제공됨
○ 자재 생산 및 서비스 분야의 영세기업 및 소기업, 농장기업 그리고 법인 지위의 소농기업의 경우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수입하는 설비, 원료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납부에 따른 유예가 이자의 징수 없이 90일의 기간으로 제공됨
○ 한 가지 이상의 유형의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납부할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납부의 유예 또는 분할 납부가 부여될 수 있음
○ 관세의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부여하는 결정은 필요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세관에 의해 결정됨

2) 관세 납부 채무

□ 관세 납부 채무의 성립은 「관세법」 제327조(관세 납부 조건)에 따른 관세 납부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형성됨[48)]
○ 관세 납부 채무는 상기 미납된 관세액과 지불해야 할 이자임

□ 관세 납부 채무에 대한 상환청구는 세관이 해당 채무에 대한 강제징수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납부자에게 서면을 통해 청구함[49)]
○ 상기 상환청구는 법적 근거, 총액, 연체 시 연체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납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송부해야 함
○ 관세 납부 채무에 대한 이행기한은 납부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함
○ 다만 관세 납부유예 또는 분할 납부 기간이 만료된 후 미납된 관세의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도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징수함

48) 「관세법」 제347조
49) 「관세법」 제348조

다. 관세 납부의 담보

□ 관세 납부의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며 물품을 반출하기 전 또는 그러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 세관에 제출되어야 함[50]

○ 「관세법」 제87조: 임시 보관의 관세체제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 「관세법」 제93조: 역외 세관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 「관세법」 제95조: 세관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의 관리 및 조치
○ 「관세법」 제222조: 세관 통제하에 수입물품을 운송할 때 「관세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관세법」 제223조: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세관감독의 적용
○ 「관세법」 제236조: 세관 운송인에 등록하기 위한 조건
○ 「관세법」 제272조: 신고 전 또는 통관 완료 전에 물품 반출
○ 「관세법」 제321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반출
○ 「관세법」 제329조: 관세 납부를 위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조건

□ 관세 납부의 보장은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수행되며, 세관 예금 계좌에 산출 금액 입금, 물품 및 운송수단의 담보, 은행의 보증, 관세 납부 의무보험 등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음[51]

3.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및 수수료

□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여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및 「관세법」이 규정한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비세가 부과됨[52]

○ 기타 세금도 법률에 의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세 등 제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50) 「관세법」 제336조
51) 「관세법」 제339조
52) 「관세법」 제289조

-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등 제세는 우즈베키스탄 관세정보포털(http://tarif.customs.uz/?lang=en_E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관세, 소비세가 각각 0~100% 이상, 부가가치세가 0% 또는 20%로 품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높은 관세 및 제세는 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자국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제조업 설비에는 세금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반대로 현지에서 생산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자동차, 섬유제품, 화장품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53]

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물품은 우즈베키스탄「부가가치세법」제211조(면세대상 수입물품)를 제외한 수입물품임[54]

○ 과세대상 금액에 관세와 소비세가 포함되며,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가 부과됨

□「관세법」상 면세품을 포함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외교 공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
  -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의 사용 포함

○ 인도주의적 원조로 수입하는 물품

○ 자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 지원 포함

○ 국제조약에 따라 차입 또는 보조금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

○ 의약품, 수의학 의약품, 의료 및 수의학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m.emerics.org/businessDetail.es?brdctsNo=315525&mid=a10400000000&systemcode=04, 검색일자: 2021. 7. 5.

54)「부가가치세법」제201조(과세대상 수입물품)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적용 불가

○ 국가 재산 관리를 위해 협정에 따라 수입하는 재산

○ 통신사업자 및 검색 시스템의 기술적 수단

- 국가 또는 특정 기관에 의한 승인 필요

○ 목재

□ 〈표 2-Ⅱ-1〉은 2019년 6월 대통령령(UP-5777)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품목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요 품목은 차량, 농기계, 면화 및 섬유, 기관차 및 철도차량으로 구분되며, 개별 품목마다 적용되는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2-Ⅱ-1〉 대통령령(UP-5777)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품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차량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 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 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 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농기계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는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는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표 2-Ⅱ-1〉의 계속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면화, 섬유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투자 프로젝트 실행의 일부로 수입되는 기술 장비, 예비품, 구성품, 보조품, 건축재, 뽕나무 재배, 자동화, 관개에 사용되는 농기계와 그 예비품, 구성품, 누에 종자, 누에 재배용 장비 조달에 필요한 원재료, 실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합성수지, 물감, 장치, 액세서리와 그 보조재료	

〈표 2-Ⅱ-1〉의 계속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차 및 철도차량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자료: 대통령령(UP-577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편 2021년 6월 발표된 내각 결의 제352호에 따라 생산 및 투자 증대와 수입신기술 장비에 대한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자국에서 제조되지 않는 676개 품목의 신기술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55]

○ 상기 676개 품목의 목록은 해당 내각 결의 제352호(https://lex.uz/docs/5445273#5451607) [부록1]에서 확인 가능함

나. 소비세

□ 소비세의 과세대상에는 소비세 대상 품목의 수입을 포함하여 소비세 대상 품목의 판매(선적), 기부금·파트너십 참가 지분으로 소비세 대상 품목 이전, 자가 사용 소비세 대상 품목이 있음[56]

○ 수입 소비세 납부는 「관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며, 수입 소비세 대상 물품 중 소비세 인지 우표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우표 부착 전 납부되어야 함

55) 내각 결의 제352호
56) 「소비세법」 제230조

○ 수입에 대한 소비세의 계산은 HS코드(TN VED)가 적용되며, 대통령 결의(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에 따름

□ 2021년도부터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트랙터 및 세미트레일러, 식품(마가린, 제과 및 기타제품) 등의 73개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됨[57]

□ 수입 자동차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4만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입 시 기존의 무관세 혜택이 폐지되고 소비세 20%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차량과 같이 엔진용량에 따른 관세 부과계수가 적용되고 있음

○ 한편 전기 자동차(HS CODE 870380, 전기 전동기로만 작동하는 차량이며 버스, 트럭,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류에 적용)의 경우 기존 수입관세 10% 부과계획이 철회됨

다. 통관수수료

□ 통관수수료는 세관이 다음과 같은 조치 또는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음[58]

○ 통관에 대한 세관이용료
○ 지정된 장소 외 또는 세관 영업시간 외 통관
○ 물품 보관에 대한 세관이용료
○ 물품 호송에 대한 세관이용료
○ 사전결정채택료
○ 허가증 발급 수수료
○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수수료
○ 법인의 현금 통관수수료

---

57) *Uzdaily*, "What will change in tax policy in 2021?," 2021. 1. 1, https://www.uzdaily.uz/en/post/62808, 검색일자: 2021. 6. 25.
58) 「관세법」 제291조

□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수수료가 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의 통관 가격 범위에 따라 BCU에서 지정한 요율로 계산되어야 함[59)]

○ 예를 들면 미화 10만~20만달러의 물품에 대한 통관수수료는 15BCU(약 미화 360달러)로 구성

□ 〈표 2-Ⅱ-2〉는 내각 결의 제204호에 따른 통관수수료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표 2-Ⅱ-2〉 우즈베키스탄의 통관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통관: 수출, 일시보관, 관세영역 내 가공 등	- 과세가격의 0.2%, 미화 25달러 이상 3천달러 이하
관세영역 내에서 처리되는 물품	- 과세가격의 01.%, 최저임금의 50% 이상
관세영역 외에서 가공하는 물품	- 물품 가공 비용의 0.1%, 최저임금의 50% 이상 - 물품 가공 비용의 0.2%, 최저임금 이상
수입 밀(TN VED 코드 1001), 설탕(TN VED 코드 1701), 건설 중인 생산시설을 위한 장비	과세가격의 0.05%, 최저임금 이상
세관신고서상 주요 양식(sheet) 세관신고서상 양식(sheet) 추가	- 10유로 상당 - 5유로 상당
세관창고에 물품 보관 - 10일 이내 보관 - 10일 경과 후 보관	- 과세가격의 0.1% - 과세가격의 0.2%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차량의 세관호송 - 200km미만 - 200km이상	- 50유로 - 120유로
품목분류 사전결정채택료	50유로
통관전문가 자격증 발급, 재등록 등	150유로
관세영역 내(외)에서 물품 가공 허가증 발급	150유로
법인의 현금 통관	50유로 상당
지적재산권 등록	15유로 상당

자료: 내각 결의 제204호

59) PwC, 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uzbekistan/corporate/other-taxes, 검색일자: 2021. 6. 25.

Ⅲ.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제도

1. 관세평가제도

가. 관세평가

□ 우즈베키스탄은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며, 관세의 과세가격은 종가세를 부과하기 위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을 관세평가라고 함

□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여섯 가지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60]

□ 과세가격 결정방법에는 거래가격, 동종물품, 유사물품, 공제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이 있음[61]

○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60) 「관세법」 제301조
61) 「관세법」 제302조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가장 주된 방법으로, 당해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62]

□ 실제지급금액에서 가산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63]
-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용
- ○ 생산지원비용
- ○ 권리 사용료
- ○ 사후 귀속이익

□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64]
- ○ 수입 후 발생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 ○ 우즈베키스탄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기타 공과금
- ○ 한편 공제금액은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 수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결정됨

---

62) 「관세법」 제303조
63) 「관세법」 제304조
64) 「관세법」 제305조

2)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물품, 유사물품, 공제가격, 산정가격, 합리적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이러한 경우 선순위의 과세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가)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65]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동일물품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품목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동일물품은 시장에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판 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

○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된 것

○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수입신고 전 90일 이내)

○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은 것

○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함

---

65) 「관세법」 제309조

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66]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일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하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은 상기 동종물품과 같음

다) 공제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67]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그리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제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공제가격은 그 물품을 수입통관한 이후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 후 발생하는 법정 공제요소를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당해 물품, 동일물품,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일 것
  ○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일 것(수입신고 전 90일 이내)
  ○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일 것

□ 과세가격의 산출은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경우와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로 구분됨

---

66) 「관세법」 제310조
67) 「관세법」 제311조

○ 동일한 상태로 국내 판매되는 경우 국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와 기타 공과금
-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상기 공제요소
-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라) 산정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68)]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일물품의 거래가격 그리고 유사물품 및 공제가격의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산정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출국의 외국제조업체가 수입국의 세관에 제시한 원가계산서를 검토하여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당해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기타 가공 비용

○ 수출국 내에서 당해 물품과 동종·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기타 운송 관련 비용

68) 「관세법」 제312조

마) 합리적 기준[69]

□ 합리적 기준(fall-back)은 이상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임

□ 합리적 기준은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 다만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다음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 두 개의 선택 가능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
○ 수출국의 국내시장가격
○ 산정가격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
○ 우즈베키스탄 외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미리 설정한 최저과세가격
○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2. 품목분류제도

가. 품목분류 체계

□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70]

---

69) 「관세법」 제313조

○ 「관세법」상 품목분류 체계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무역 및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규제 조치를 실현하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상품명명법의 해석을 위한 기본 규칙」에 따라 수행되며, 특정 유형의 품목분류에 대한 결정은 세관에서 결정하고 있음[71]

○ 통관 과정에서 잘못된 품목분류가 발견될 경우 세관은 자체적으로 품목분류 결정을 내림

○ 이러한 품목분류에 대한 세관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짐

○ 한편 세관의 결정 및 공무원의 조치(무활동)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 HS 코드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상품명명법」에 따라 'TN VED'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상기 HS코드 품목분류표는 해당 웹사이트(http://fmc.uz/legisl.php?tnvd2017=tnved_2017)에서 확인할 수 있음

70) 「관세법」 제367조
71) 「관세법」 제369조

[그림 2-Ⅲ-1] 우즈베키스탄 품목분류코드 확인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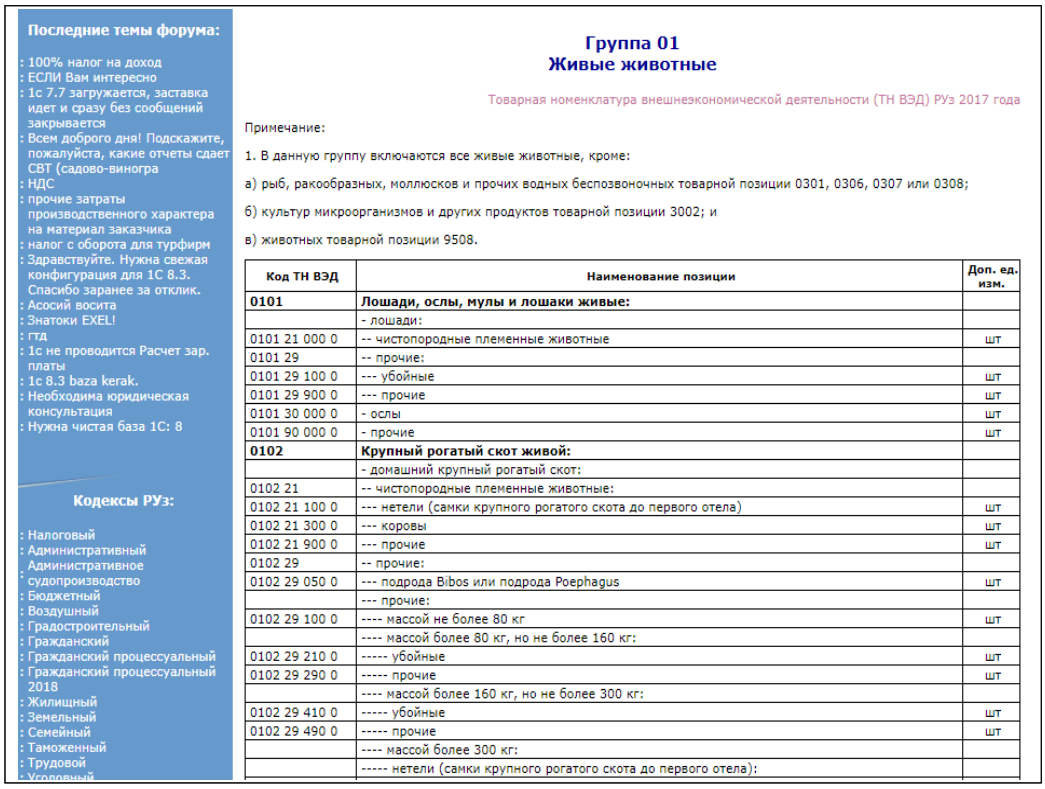

Последние темы форума:

: 100% налог на доход
: ЕСЛИ Вам интересно
: 1с 7.7 загружается, заставка идет и сразу без сообщений закрывается
: Всем доброго дня! Под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какие отчеты сдает СВТ (садово-виногра
: НДС
: прочие затрат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а материал заказчика
: налог с оборота для турфирм
: Здравствуйте. Нужна свежая конфигурация для 1С 8.3. Спасибо заранее за отклик.
: Асосий восита
: Знатоки EXEL!
: гтд
: 1с не проводится Расчет зар. платы
: 1с 8.3 baza kerak.
: Необходима юридическ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Нужна чистая база 1С: 8

Кодексы РУз:

: Налоговый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е судопроизводство
: Бюджетный
: Воздушный
: Градостроительный
: Гражданский
: Гражданский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 Гражданский процессуальный 2018
: Жилищный
: Земельный
: Семейный
: Таможенный
: Трудовой
: Уголовный

Группа 01
Живые животные

Товарная номенклатура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Н ВЭД) РУз 2017 года

Примечание:

1. В данную группу включаются все живые животные, кроме:

а) рыб, ракообразных, моллюсков и прочих водных беспозвоночных товарной позиции 0301, 0306, 0307 или 0308;

б) культур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и других продуктов товарной позиции 3002; и

в) животных товарной позиции 9508.

Код ТН ВЭД	Наименование позиции	Доп. ед. изм.
0101	**Лошади, ослы, мулы и лошаки живые:**	
	- лошади:	
0101 21 000 0	-- чистопородные племенные животные	шт
0101 29	-- прочие:	
0101 29 100 0	--- убойные	шт
0101 29 900 0	--- прочие	шт
0101 30 000 0	- ослы	шт
0101 90 000 0	- прочие	шт
0102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живой:**	
	- домашний крупный рогатый скот:	
0102 21	-- чистопородные племенные животные:	
0102 21 100 0	--- нетели (самки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до первого отела)	шт
0102 21 300 0	--- коровы	шт
0102 21 900 0	--- прочие	шт
0102 29	-- прочие:	
0102 29 050 0	--- подрода Bibos или подрода Poephagus	шт
	--- прочие:	
0102 29 100 0	---- массой не более 80 кг	шт
	---- массой более 80 кг, но не более 160 кг:	
0102 29 210 0	----- убойные	шт
0102 29 290 0	----- прочие	шт
	---- массой более 160 кг, но не более 300 кг:	
0102 29 410 0	----- убойные	шт
0102 29 490 0	----- прочие	шт
	---- массой более 300 кг:	
	----- нетели (самки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до первого отела):	

자료: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상품명명법」 웹사이트, http://fmc.uz/legisl.php?tnvd2017=tnved_2017_01, 검색일자: 2021. 6. 14.

나. 품목분류 사전결정

□ 세관은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사전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품목분류 사전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72)]

○ 사전결정은 세관의 구속력이 있고 형식은 관세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 품목분류 사전결정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사전결정은 신청서의

72) 「관세법」 제370조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이루어짐[73]

○ 물품명, 물품의 주요 기술적·상업적 특성 및 물품의 고유 특성을 분류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며, 필요 시 사진, 그림, 도면, 증명서 등 사전결정을 위한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법인의 경우 이름(성과 이름을 모두 포함한 이름)과 직위를 나타내는 기업의 책임자가 서명하고 기업의 위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지정인이 서명하고 거주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세관은 신청서의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자에게 추가정보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며, 신청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보완해야 함[74]

○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세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추가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전결정 신청은 거부됨

○ 한편 품목분류 분쟁이 있는 경우 세관은 물품의 견본 또는 표본을 통해 WCO에 질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결정은 WCO의 회신을 받은 후 이루어짐

○ 세관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후 3영업일 이내 품목분류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음

□ 품목분류 사전결정에 대한 결과는 해당 결정이 변경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결정일로부터 1년간 그 결과가 유효하게 적용됨[75]

○ 유효기간이 끝나면 해당 결정은 무효화되며, 이해관계자의 새로운 사전결정 신청이 가능함

□ 품목분류 사전결정은 일정한 사유로 변경 또는 철회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에 관한 결정은 채택일 다음 영업일까지 사전결정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송부되어야 함

---

73) 「관세법」 제371조
74) 「관세법」 제371조
75) 「관세법」 제372조

○ 사전결정의 변경사유로는 품목분류 변경, 사전결정 시 결점 및 오류 식별 등이 있으며, 변경 내용은 지정된 날짜에 발효됨

○ 사전결정의 취소사유로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이 있으며, 해당 결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

Ⅳ. 관세율제도

1. 관세율 종류

□ 우즈베키스탄의 관세율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협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세율인 기본관세율과 특별관세(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Ⅳ-1〉 우즈베키스탄의 관세율 종류

구분		내용
기본관세율(MFN Rate)		우리나라를 포함한 WTO 협정 회원국에 적용되며, HS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함
특별관세	보호조치	특정 품목의 수입으로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임
	덤핑방지관세	수출국 기업의 부당하게 낮은 금액(덤핑가격)의 수출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 수입국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이하 덤핑마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 추가적으로 부과함
	상계관세	수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수입국의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에 추가적으로 부과함

자료: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우즈베키스탄은 최혜국대우(MFN)를 해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부과하며,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에 추가세율(таможенные сборы)을 추가하여 적용함

○ 최혜국대우(MFN)가 적용되는 국가는 한·중·일을 포함한 총 47개국임

- 해당 국가 목록은 해당 법령 No. 3267(https://lex.uz/docs/4911947)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본관세율은 대통령 결의(PP-3818)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추가 간소화 및 관세 시스템 개선 조치」를 따름

[그림 2-Ⅳ-1] 기본관세율 및 추가세율 예시

자료: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품목별 정보검색」,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nohref, 검색일자: 2021. 6. 30.

○ 상기 결의는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로 제공되며, 국문으로는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76]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2-Ⅳ-1]은 기본관세율 및 추가세율에 대한 예시로 '토마토케찹 및 기타 토마토소스'의 경우 기본관세율 20%에 추가세율 0.2%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관세로는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제도를 두고 있으며, 특별관세의 적용 절차는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77]에서 정하고 있음

○ 상기 법의 목적은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품수입에서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적용 분야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있음[78]

2. 세율 적용 우선순위

□ 〈표 2-Ⅳ-2〉는 우즈베키스탄의 세율 적용 우선순위를 정리한 것으로 특별관세(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가 관세 이외에 1순위로 추가적으로 적용됨

○ 2순위로 FTA 협정관세 등의 협정세율이 적용되고 3순위로 기본관세율이 적용됨

---

76)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55&natnCd=UZ, 검색일자: 2021. 6. 30.

7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НЫХ МЕРАХ, АНТИДЕМПИНГОВЫХ ИКОМПЕНСАЦИОННЫХ ПОШЛИНАХ

78)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조(목적)

〈표 2-Ⅳ-2〉 특혜관세 적용 국가

순위	세율종류	구분	요건
1순위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덤핑, 보조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관세의 부과 → 기본관세율에 일정률을 추가하여 부과	- 부과대상의 조사 및 선정 -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의 물품별 부과
2순위	협정관세(FTA 특혜관세 등)	FTA 등 협정 상대국에 부과 →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 또는 0%의 세율이 적용	-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 원산지가 가맹국인 물품
3순위	기본관세율	상기 세율에 해당사항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	-

자료: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912&natnCd=UZ, 검색일자: 2021. 7. 1.

3. 관세율 수준

□ 우즈베키스탄은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장벽이 높은 편이며, 관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세부 품목에 대한 세율이 빈번하게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의 확인이 필요함

□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농식품과 생필품, 보건의료 관련 제품,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기계 설비 및 원재료 등에는 무관세 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국 내 보호가 필요한 산업과 품목은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음

□ WTO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품목의 평균 MFN 실행관세율은 7.6%이며,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각각 11.4%와 7.0%로 비농산물은 농산물과 비교하여 38.6% 가량 낮은 관세수준을 보임[79)]

79) WTO·ITC·UNCTAD, 2021, p. 187.

□ 2020년 기준 농산물과 비농산물의 MFN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비농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비중이 더 크고 상대적으로 농산물에 고관세율을 적용함

○ 무관세 적용 비율은 MFN 관세율 기준 농산물은 29.4%, 비농산물은 46.9%임

〈표 2-Ⅳ-3〉 농산물 및 비농산물의 관세율 분포

(단위: %)

구분		무관세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초과 15%이하	15%초과 25%이하	25%초과 50%이하	50%초과 100% 이하	100% 초과
농산물	2020년 MFN 실행관세	29.4	14.0	19.5	4.6	24.6	6.4	1.1	0.4
비농산물		46.9	21.0	14.8	4.9	9.4	2.6	0.2	0.2

자료: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2021, p. 187.

□ 2020년 기준 산업별 MFN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음료·담배(32.1%)이며, 의류(28.1%)도 높은 편에 속함

○ 무세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면섬유(100%)이며, 반면 가장 낮은 품목은 평균관세율이 높은 편인 음료·담배(0%)와 의류(0%)임

○ 최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직물(〉1,000%)이며, 전기기계(132%)와 무관세 비중이 낮은 편인 의류(301%)와 음료·담배(117%) 등임

〈표 2-Ⅳ-4〉 산업별 관세율 분포

(단위: %)

구분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대 세율	비중[1]	무관세 비중[2]
동물제품	6.9	33.1	15	1.0	84.0
낙농제품	10.1	28.6	20	0.1	16.3
과실 및 채소, 식물제품	17.7	11.4	40	0.7	20.6
커피, 차	10.9	29.2	30	0.6	38.5

〈표 2-Ⅳ-4〉의 계속

구분	MFN 실행관세			수입	
	평균 세율	무관세 비중	최대 세율	비중[1]	무관세 비중[2]
곡물 및 그 조제품	11.5	30.2	41	3.1	66.4
종자, 기름	4.0	42.2	20	2.4	38.0
설탕 및 과자류	10.7	23.5	32	1.3	68.0
음료, 담배	32.1	0	117	0.2	0
면섬유	0.0	100.0	0	0.0	100.0
기타 농산물	2.8	55.1	20	0.3	75.0
어류 및 수산물	6.2	0.8	15	0.1	1.5
광물, 금속	5.2	49.9	30	17.4	58.1
석유제품	0.4	96.2	10	3.4	97.5
화학제품	2.5	77.5	31	12.6	65.2
목제품, 종이제품 등	6.2	51.1	20	4.8	51.6
직물	13.8	20.5	〉 1,000	1.9	27.7
의류	28.1	0	301	0.2	0
가죽, 신발 등	12.0	16.9	80	1.6	26.0
비전기기계	1.8	79.4	32	26.5	78.1
전기기계	6.4	20.0	132	6.2	7.6
운송기기	9.2	47.0	30	9.8	23.0
기타 제조업 제품	5.2	45.3	20	5.7	38.3

주: 1) 전체 수입에서 해당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
2) 해당 품목군의 전체 수입 중 MFN 실행관세가 무세인 수입의 비중
자료: WTO·ITC·UNCTAD(2021), p. 187.

4. 관세율 구성

□ 우즈베키스탄은 HS 상품분류와 유사한 품목그룹별로 대분류는 2단위, 중분류는 4단위, 소분류는 6단위로 관세율을 구성함

○ 6단위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것으로 국제 공통임

- 부(sections)는 상품군별 분류
- 대분류는 2자리 류(chapters)는 종류별 및 가공도별 분류
- 중분류는 4자리 호(headings)는 동일류 내 품목의 종류별 및 가공도별 분류
- 소분류는 6자리 소호(sub-headings)는 동일호 내 품목의 용도별 및 기능별로 분류

□ HS Code(HS Code 6자리부터 확인 가능)를 이용하여 우즈베키스탄 관세정보포털(http://tarif.customs.uz)에서 관세 및 제세를 조회할 수 있음

[그림 2-Ⅳ-2] HS Code를 이용한 관세율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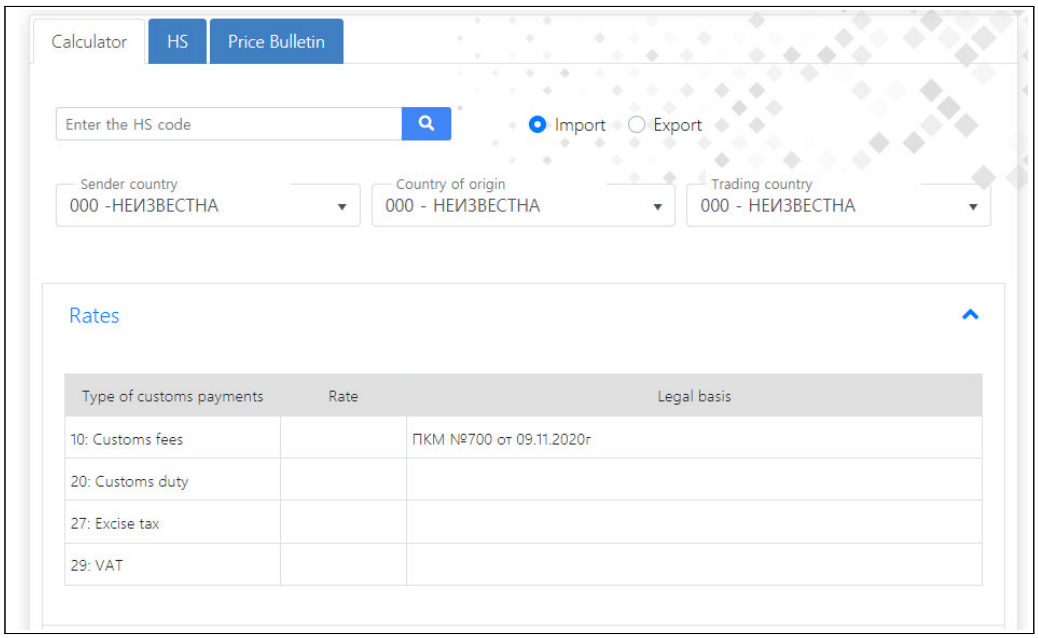

자료: 우즈베키스탄 관세정보포털, http://tarif.customs.uz/, 검색일자: 2021. 7. 1.을 저자가 캡쳐함

Ⅴ. 관세 감면 및 환급

1. 관세 감면제도

□ 관세의 감면세란 관세의 납세의무를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함

○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감세, 반면 전부를 면제하는 것은 면세라고 함

□ 우즈베키스탄의 관세 감면제도는 크게 「관세법」에 따른 감면과 결의안에 따른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정 감면 대상 물품은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고 특정 감면 대상 물품은 각각의 결의안에 규정되어 있음

가. 관세법에 따른 감면

1)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관세 면제

□ 「관세법」 제297조에 규정된 대외무역정책 시행에 따른 혜택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열 네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여객 및 화물 차량의 사고(고장)와 관련하여 경유지 또는 관세영역 밖에서 구입한 장비, 연료, 식품 등의 물품

○ 2) 우즈베키스탄 통화, 외화 및 유가증권

○ 3) 수출용 원재료 및 장비, 연료, 식품 및 수입용으로 용선한 어업 제품
○ 4) 국가 수입으로 전환될 물품
○ 5)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정에 따른 인도적 지원으로 수입되는 물품
○ 6) 정부, 국제기구를 통해 기술 지원 제공을 포함한 자선용 물품
○ 7)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제3국을 목적지로 하는 물품
○ 8) 국제조약에 따라 국제 및 외국 정부 금융기관이 제공한 대출(신용) 및 보조금을 통해 수입한 물품
○ 9)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생산을 위해 승인된 자본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이 33%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한 물품
○ 10) 외국인 투자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밖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자, 외국 시민 및 무국적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입된 재산
○ 11) 총금액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투자를 하는 해외법인이 관세영역으로 수입한 물품(수입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상품일 것)
○ 12) 생산분배계약에 따라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수출상품, 생산분배계약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소비재 및 서비스, 생산분배계약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투자자 및 기타 법적실체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소비재 및 서비스
○ 13) 법률에 따라 승인된 목록에 해당되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기술장비와 예비부품
  - 단 수입 기술장비의 수출을 위한 무상 양도의 경우(수입 이후 3년 이내), 특혜 취소에 따라 특혜적용 모든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지불의무가 있음
○ 14) 승인된 국가기관의 서면 확인서가 있는 경우 통신사업자 및 운영 검색 조치 시스템의 기술 인증을 위해 특수기관이 구매한 물품

2) 통관에 대한 관세 면제

□ 「관세법」 제299조에 규정된 통관에 대한 혜택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여덟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인도주의적 지원, 무상 지원 또는 기술 지원 제공을 포함한 자선용 물품
○ 2) 면세 한도 내 비상업용 물품
○ 3) 임시 보관 등의 관세체제하에 놓인 물품
○ 4)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 5) 재수입하는 물품(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는 물품)
○ 6) 재수출하는 물품(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는 물품)
○ 7) 국방부, 국가안보국, 내무부, 비상사태부, 관세위원회에서 수입하는 물품
○ 8) 법인이 수입하는 물품으로 최저임금의 10배 이하인 물품

3) 국제조약에 따른 관세 면제

□ 관세 특혜는 관세 면제의 형태로 부여되며, 관세율의 인하 또는 관세영역으로 특혜 수입 또는 특정 국가 원산지 상품의 특혜 수출을 위한 할당량 설정의 형태로 이루어짐

□ 「관세법」 제300조에 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됨
○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형성하거나 자유무역체제를 수립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는 CIS 10개국(벨로루시,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해당됨[80]
○ 우즈베키스탄을 원산지로 하며,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거나 자유무역체제를 수립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 우즈베키스탄이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무역 및 경제관계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80)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등록, 1998년 4월 8일 제429호(https://www.lex.uz/acts/670287#670310)

-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원산지가 설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관세율은 2배임

○ 우즈베키스탄 법령에 따른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경우

4) 기타 관세체제에 따른 관세 면제

가) 관세영역 외 가공

□ 관세영역 외에서 물품을 가공하는 경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존물 및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됨[81)]

○ 통관 목적상 미가공 수출품의 폐기물은 관세영역으로 재수입되는 물품으로 간주됨

□ 수입 가공품을 계약, 보증 의무, 제조 결함으로 무상으로 실시되는 반출물품의 수리의 경우 결함의 존재가 사전에 고려되지 않은 자유유통(수입)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됨[82)]

○ 다만 자유유통을 위하여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결함이 있음이 고려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관세영역 내 가공

□ 관세영역 내에서 가공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제가 적용됨[83)]

○ 가공품의 형태로 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관세와 세금을 조건부 면제받고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됨

□ 수출된 가공 생산품, 잔존물 및 폐기물의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됨[84)]

○ 다만 특정 유형의 상품과 관련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처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특정 처리 작업에 대한 제한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85)]

---

81) 「관세법」 제51조
82) 「관세법」 제53조
83) 「관세법」 제70조
84) 「관세법」 제81조

다) 상업용 차량의 관세영역으로의 임시수입

□ 상업용 차량의 임시수입은 외국영토에 등록되어 여객 및 화물의 상업적 운송에 사용되며, 관세영역으로 수입하는 경우 조건부 면제가 적용됨[86]

○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 차량의 임시수입의 총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수입된 상업용 차량의 재수출은 운송 작업이 완료된 직후 수행되어야 함[87]

□ 또한 화물의 적재, 하역, 취급 및 보호를 위한 장비로써 상업용 차량의 장비 및 부품의 임시수출입의 경우에도 조건부 면제가 대상임[88]

○ 임시수입의 경우 상업용 차량과 함께 반입되고 재수출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임시 수출의 경우 상업용 차량과 함께 반출되고 재수입될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함

나. 결의안에 따른 감면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내각 또는 대통령 결의안을 통해 특정 감면 대상 물품을 발표하고 있음

○ 이러한 공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함

□ 내각 결의 제352호에 따라 2021년 6월 4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사품이 생산되지 않는 특정 기술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89]

○ 상기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676개 기술 장비가 포함되며, 세부 목록은

85) 「관세법」 제82조
86) 「관세법」 제145조
87) 「관세법」 제146조
88) 관세법 제152조, 제153조
89) Gazeta, https://www.gazeta.uz/ru/2021/06/07/privilege/, 검색일자: 2021. 7. 16.

웹사이트(https://www.gazeta.uz/ru/2021/06/07/privilege/)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원자로
- 동위원소 분리를 위한 장비 및 장치
- 유제품 제조 가공 장비
- 베이커리 제품, 파스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장비
- 제과 산업을 위한 장비, 코코아 가루 및 초콜릿 생산을 위한 장비
-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장비
- 원사 염색기
- 자동 재봉틀
- 좌석이 50석 이상 300석 미만인 민간 여객기
- 일부 유형의 의료 장비 및 기타 장비

□ 한편 대통령 결의(PP-4718) 「지역 내 다층 건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2023년 7월 1일까지 다층 모놀리식(monolithic) 주거용 건물의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장비, 기계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됨

□ 해당 기간 건설 산업에 필요한 설비, 장치, 예비 부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를 최대 120일까지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한편 동 조치는 2020년 5월 시르다리아 주에서 발생한 인공 댐 붕괴 사태로 인한 침수 피해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취지로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 것임

2. 관세 환급제도

□ 관세 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

□ 우즈베키스탄은 「관세법」상 과오납 또는 특정 관세체제에 따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

□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징수된 관세 환급의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납입일 또는 징수일로부터 3년 이내 환급 또는 상계됨

○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징수된 관세의 환급조건은 관세의 과오납, 위약물품으로 폐기하는 경우 등으로 법령에 따름

○ 환급신청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했을 때 또는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세관이 확인했을 때 이루어짐

○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에 대한 세관의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짐

- 환급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환급은 환급신청서에 명시된 납세의무자의 계좌로 지불하며,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관세와 세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특정 관세체제에 따라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음의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름[90]

○ 최혜국대우 또는 자유무역체제의 경우 과납 또는 징수된 관세는 납입일 또는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또는 상계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재수출체제의 경우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수출관세 및 세금 그리고 경제정책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납부한 수입관세 및 세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환급할 수 있음[91]

90) 「관세법」 제353조
91) 「관세법」 제35조

- 재수출되는 물품이 자연적인 마모 또는 정상적인 운송 및 보관조건에서의 소모로 인하여 변하는 것을 제외하고 반입 시점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일 것
- 재수출체제에서의 물품 반출이 반입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일 것
- 재수출되는 물품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을 것

○ 재수입의 경우 수출체제에서 물품을 반출할 때에 납부한 수출관세 및 세금은 반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수입 체제에서 해당 물품을 재반입한다는 조건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관의 신고로 환급할 수 있음[92)]

92) 「관세법」 제59조

Ⅵ. 원산지제도

1. 원산지결정

□ 우즈베키스탄의 원산지제도는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라 특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혜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비특혜 원산지규정은 특별관세(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와 원산지표시, 통계자료 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

○ 원산지결정 기준 관련 절차와 양식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의 제994호(https://lex.uz/ru/docs/4643161)에 명시되어 있음

□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물품이 완전 생산 또는 충분한 가공을 거친 국가로 관세동맹 및 지역(region) 또는 한 국가의 일부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93]

○ 완전 생산된 물품은 다음과 같음[94]

- 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 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및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 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93) 「관세법」 제358조
94) 「관세법」 제359조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 상기 조항에 명시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95]

- HS코드 4단위 변형을 유발하는지 여부
-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 생산 공정 및 기술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가 현저히 증가되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

□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고 수출국/재수출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물품의 원산지를 전자 형식으로 확인하는 문서임[96]

□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세관신고서 및 기타 서류와 동시에 제출되며, 분실 시 공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97]

○ 우즈베키스탄이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쿼터 또는 대외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기타 조치에 의해 규제되는 물품

---

95) 「관세법」 제360조
96) 「관세법」 제363조
97) 「관세법」 제364조

○ 통관 서류에 물품의 원산지정보가 누락되었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할 근거가 있는 경우
○ 우즈베키스탄의 법률 및 국제조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 세관은 우즈베키스탄 법률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을 거부할 수 있음[98)]

□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되었거나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관세율이 적용됨[99)]
○ 특혜관세는 세관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정확한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출물품의 인보이스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인보이스 또는 계약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설비, 장비 관련 정보, 생산 공정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수입 원자재 및 부품 또는 수입 부속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 수입된 원자재 또는 부품의 통관 확인서(HS Code 포함)
- 수입된 원자재 또는 부품의 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가서류

□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웹사이트(verification.expertiza.uz)를 통해 그 내용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98) 「관세법」 제365조
99) 「관세법」 제366조

○ 이와 반대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원산지규정 관리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대외투자무역부 산하 공공기관(Uzbek expertiza)에서 담당하고 있음

○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는 제품 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적이 없는 국가로의 수출에 한함

○ [그림 2-Ⅵ-1]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임

[그림 2-Ⅵ-1]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table>
<tr><td colspan="2">1. Отправитель/ Экспортер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почтовый адрес)
Consignor/Exporter (name and postal address)</td><td colspan="5" rowspan="2">4. № _____
СЕРТИФИКА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А
(общая форма)
Выдан в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REPUBLIC OF UZBEKISTAN</td></tr>
<tr><td colspan="2">2. Получатель/ Импортер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почтовый адрес)
Consignee/Importer (name and postal address)</td></tr>
<tr><td colspan="2">3. Сред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и маршрут следования (насколько это известно)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td><td colspan="5">5. Для служебных отметок
Remarks</td></tr>
<tr><td>6. №</td><td>7. Маркировка и номера упаковок
Marks & No PKGS</td><td>8.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и вид упаковки, описание товара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td><td>9. Критерии происхождения
Origin criterion</td><td>10. Вес брутто/ нетто (кг)
Gross/net weight quantity</td><td>11. Номер и дата счета-фактуры
Number and date of invoices</td></tr>
<tr><td colspan="2">12. Удостоверение
Настоящим удостоверяется, что декларация заявителя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Signature DateStamp
ПодписьДатаПечать</td><td colspan="5">13. Декларация заявителя
Нижеподписавшийся заявляет, что вышеприведенные сведен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 все товары имеют происхождение в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originate in the

Экспортируется в
Exported to

Signature Date Stamp
ПодписьДатаПечать</td></tr>
</table>

자료: 우즈베키스탄 내각 결의 제994호

□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표기된 상품 설명 라벨 부착과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100]

○ 수입업자는 식품, 개인 위생 품목 및 기타 특정 소비재에 대한 라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수입 전에 라벨링 및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야 함

100) 미국 국제무역관리청(ITA), https://www.export.gov/apex/article2?id=Uzbekistan-Labeling-Marking-Requirements, 검색일자: 2021. 7. 2.

Ⅶ. 보세제도

1. 개요

□ 우즈베키스탄의 보세제도는 보세창고(세관보세창고, 자유보세창고), 면세점, 보세운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관세법」 제14장(세관보세창고), 제15장(자유보세창고), 제17장(면세점), 제18장(보세운송)에서는 각 장치요건, 필요서류, 허용작업, 장치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 「관세법」 제26장(세관보세창고, 자유보세창고 및 면세점)에서 세관보세창고, 자유보세창고 및 면세점의 허가와 청산에 대한 공통사항을 규정함

□ 세관보세창고, 자유보세창고 및 면세점 운영에 대한 허가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에서 수행함[101]

○ 세관이 설립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세관보세창고의 소유자인 세관과 물품 및 운송수단을 창고에 장치시키는 자와의 상호관계는 법에 따라 이루어짐

○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는 세관보세창고, 자유보세창고 및 면세점의 등록부를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함

□ 세관보세창고, 자유보세창고 및 면세점의 청산(Liquidation)은 면허 효력의 해지 또는 취소된 때 이루어짐[102]

---

101) 「관세법」 제176조
102) 「관세법」 제177조

○ 청산 결정을 내린 날부터 물품은 임시 보관 체제에 있는 물품으로 간주되며, 15일 이내에 다른 관세체제에 배치되어야 함

○ 청산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물품의 보관 및 판매를 할 수 없음

○ 청산에 따른 물품의 임시 보관기간은 자유보세창고와 면세점의 경우 60일, 세관보세창고의 경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면허 취소로 인해 청산되는 경우 물품이 청산되는 창고 또는 면세점에 있었던 전 기간에 대하여 보관이용료가 징수되며, 각 소유자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보세창고

□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하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세관보세창고와 자유보세창고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2-Ⅶ-1〉은 세관보세창고와 자유보세창고를 정리한 것임

○ 세관보세창고는 역내외 수출입 시 화물을 보세상태로 대기하는 데 사용 목적을 두고 있는바 임시 수입통관 시 사용되고 수입 전 임시 작업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장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자유보세창고는 보세상태로 화물의 조립, 생산, 포장 등의 추가 작업을 거친 후 역외 수출 시 사용 목적을 두고 있는바 역내로 판매가 불가능하고 역내의 제품이 보세상태로 반입 가능하며, 장치기간의 제한이 없음

〈표 2-Ⅶ-1〉 세관보세창고와 자유보세창고

구분	세관보세창고 (Таможенный склад)	자유보세창고 (Свободный склад)
목적	역내외 수출입 시 보세상태로 대기	보세상태로 화물 조립, 생산, 포장 등 추가 작업 후 역외 수출 시 사용
관세 지불	미지불	미지불 또는 지불
대상	전체(특정 상품 제외)	전체(특정 상품 제외)
특성	임시수입 통관 시 사용하며, 수입 전 임시 작업 가능	역내로 판매가 불가능하며, 역내의 제품이 보세상태로 반입 가능함
위치	트럭 터미널, 철도 터미널, 공항 등	지정된 특구
장치 기간	최대 3년	제한 없음

자료: 「관세법」 및 현지 업체 간담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가. 세관보세창고

□ 세관보세창고란 수입물품이 보관기간 동안 관세, 세금 및 경제정책 조치의 적용 없이 세관감독하에 보관되고 수출체제에서의 반출이 예정된 물품의 경우 특혜를 제공받아 세관감독하에 보관되는 체제를 말함[103]

□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보세창고에 장치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104]

○ 관세영역으로 수입이 금지된 물품

○ 관세영역으로부터 수출이 금지된 역내 물품

○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세관보세창고 내 보관 기간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의약품 및 식품

103) 「관세법」 제90조
104) 「관세법」 제91조

□ 세관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필요서류(세관신고서 및 선적서류 등)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105]

□ 세관보세창고 내 물품의 보관기간은 3년이며, 물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관세체제하에 장치되도록 신고해야 함[106]

○ 보관, 소비, 판매가 제한된 물품은 다른 관세체제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180일 전까지 세관보세창고에서 반출되어야 함

□ 세관보세창고 내 작업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는 물품의 본래 성질이나 모양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107]

○ 보관물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작업
○ 보관물품의 검사 및 시험
○ 「관세법」 제211조(물품의 견본 또는 견본 채취)에 따른 견본 채취
○ 구분, 분류, 분할, 조립, 재포장, 라벨링(소비세 스탬프 표시 제외) 등의 물품의 판매 및 운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
○ 물품의 혼합 또는 가공을 제외한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타 필요한 작업

□ 세관보세창고 내 물품의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다른 체제로 신고되어야 하며, 다른 체제가 적용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세관창고에서 반출됨[108]

○ 다만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보관기간이 만료된 물품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도록 신청해야 함[109]

---

105) 「관세법」 제91조
106) 「관세법」 제94조
107) 「관세법」 제95조
108) 「관세법」 제98조
109) 「관세법」 제99조

나. 자유보세창고

□ 자유보세창고란 외국물품의 경우 관세, 세금 및 경제정책 조치의 적용 없이 물품을 일정한 지역 및 장소에 장치하는 체제를 말함[110]

□ 관세영역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우즈베키스탄의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자유보세창고에 장치될 수 있음[111]

○ 다만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치거나 특별한 보관조건이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개조된 구역에 보관해야 함

□ 자유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필요서류(세관신고서 및 선적서류 등)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112]

□ 자유보세창고 내 작업은 다음과 같이 보관하는 물품의 본래의 성질이나 모양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가능함[113]

○ 보관물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작업

○ 구분, 분류, 분할, 조립, 재포장, 라벨링(소비세 스탬프 표시 제외) 등의 물품의 판매 및 운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

○ 간단한 조립 작업

○ 보관물품을 기술 장비 및 예비 부품으로 사용하는 작업, 적재 및 하역, 창고 내 운영되는 기타 기술적인 수단

○ 한편 창고 내 보관물품은 소매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음

---

110) 「관세법」 제100조
111) 「관세법」 제101조
112) 「관세법」 제102조
113) 「관세법」 제103조

□ 세관보세창고와 달리 자유보세창고 내 물품의 보관기간은 별도로 제한이 없음[114]

□ 자유보세창고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않는 한, 보관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관세 납부 및 경제정책 조치가 적용됨[115]

○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물품은 수출관세, 세금 및 경제정책 조치의 적용을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물품으로 간주되고 반출에서는 그 밖의 목적으로 외국 물품으로 간주됨

○ 자유보세창고에 장치되고 수출 상태로 역외 반출 예정인 물품은 수출관세 등 제세의 면제 또는 납부금액의 환급이 규정된 경우 수출관세 등 제세를 면제받거나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반출은 관세 등 제세의 환급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자유보세창고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물품을 반환하는 경우나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됨

3. 면세점

□ 면세점이란 수입물품이 관세, 세금 및 경제정책 조치의 적용 없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이 정하는 장소의 관세영역에서 세관감독하에 판매되는 체제를 말함[116]

○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통과하지 않는 개인 및 외국인에게 면세점에서 물품을 판매(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면세점 체제하에 물품의 판매는 세관감독하에 이루어짐

□ 면세점 물품은 다음의 작업을 허용하되 판매될 때까지 본래의 성질이나 모양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반드시 면세품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소매 판매용

114) 「관세법」 제104조
115) 「관세법」 제105조
116) 「관세법」 제113조

으로 포장되어야 함[117]

○ 물품이 판매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작업

○ 분류, 포장, 재포장, 라벨링(소비세 스탬프 표시 제외)을 포함한 판매될 상품의 준비

□ 면세점 체제에 두는 물품은 신고인이 필요서류(세관신고서 및 선적서류 등)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118]

4. 보세운송

□ 보세운송이란 수입물품이 관세, 세금 및 경제정책 조치의 적용 없이 외국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관감독하에 2개의 우즈베키스탄 세관 사이를 이동하는 체제를 말함[119]

○ 「관세법」 제18장에서는 통과(Таможенный транзит)체제라고 보세운송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영역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우즈베키스탄의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보세운송이 가능함[120]

○ 일반적인 물품의 운송은 「관세법」 제31장, 국제우편과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운송은 제24장과 제25장에 따라 수행됨

○ 관세 지불이 보장되는 경우 관세영역을 통한 보세운송이 허용되는 물품 목록은 법률에 의해 결정됨

---

117) 「관세법」 제114조
118) 「관세법」 제115조
119) 「관세법」 제116조
120) 「관세법」 제117조

□ 보세운송 체제에 물품을 장치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필요서류(세관신고서 및 선적서류 등)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121]

□ 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송을 거치는 중간 세관당국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작업이 허용됨[122]

○ 관세영역으로 반입된 차량에서 물품이 수출될 차량으로 재적재

○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이 손상된 경우를 포함하여 임시 보관 장소에서 물품의 하역 및 보관

○ 한편 중간 세관당국은 물품에 대한 세관감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운송을 금지할 권리가 있음

○ 또한 불가항력 또는 기타 상황 등이 보세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운송인은 물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즉시 가장 가까운 세관당국에 알리고 지정된 다른 장소로 물품을 운송해야 함

□ 보세운송 기한은 운송방식에 따른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권한 있는 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세관당국에서 보세운송을 완료할 수 있음[123]

○ 항공운송의 경우 3일

○ 육로 및 수로 운송의 경우 15일(1천km)

○ 한편 필요한 경우 중간 세관당국은 권한 있는 자의 신청서에 명시된 기한에 따라 보세운송 완료를 위한 다른 기한을 설정해야 함

---

121) 「관세법」 제118조
122) 「관세법」 제119조(통과체제에 따른 화물 운송 및 기타 작업)
123) 「관세법」 제120조(통과체제의 종료)

Ⅷ. 수출입규제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가. 일반적인 수출입 금지 및 제한

1) 수출입 금지 및 제한 근거

□ 우즈베키스탄의 대외경제활동 통제와 관련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대외투자무역부이며, 일반적인 수출입의 금지 및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대외경제활동법」에 두고 있음[124)]

○ 상기 법령은 대외경제수행 관련 관계를 규율하고 경제안보 보장과 대외경제 수행 시 경제 주권 보호 및 경제 이익의 보호, 경제 발전의 동기부여, 세계경제시스템으로 편입을 위한 조건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대외경제활동법」에 의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125)]

○ 안보의 보장

○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 및 환경보호

○ 공중도덕 및 법과 질서의 준수

---

124)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1월 투자위원회와 대외무역부를 통합하여 대외투자무역부를 설립하고 대외무역 및 국제경제협력 등을 담당하는 한편, 산하에 관세·비관세규제위원회, 외국투자유치청, 기술개발청으로 구성된 3개 기관을 신설한 바 있음

125) 「대외경제활동법」 제20조

○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문화유산 보존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과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부터의 보호
○ 우즈베키스탄의 경상수지 균형의 유지
○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의무의 이행
○ 천연자원고갈의 예방
○ 기타 우즈베키스탄 이익의 보호

2)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우즈베키스탄은 공공질서, 영토 수호, 정치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저해와 전쟁, 폭력, 테러 및 종교적, 인종차별을 목적으로 한 인쇄출판물 · 원고 · 그림 · 사진 · 영화 등의 매체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며, 기타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군비, 탄약 및 군사장비
○ 항공기 부품 및 그 장비
○ 군수물자 및 항공기 제조를 위한 기계
○ 폭발물 및 독극물
○ 드론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위한 도구
○ 보건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정보통신개발부 허가를 받지 않은 고주파 라디오 전자통신기기
○ 우즈베키스탄 자연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오존 파괴 물질, Red book에 포함된 약용, 식용 야생초 및 관상식물, 희귀 멸종 위기 동물[126]
○ 에너지 표준기준 및 라벨링 기준 미부합 가전제품
○ 기타 금지 물품

□ 〈표 2-Ⅷ-1〉은 수출입 허가 및 계약 등을 규제받는 특정 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수출입

126)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연보호위원회 선정 314종의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정보를 수록함

금지 및 제한 물품 가운데 특정 유형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허가 및 수출입 계약 부분까지도 규제하고 있음[127]

○ 해당 품목의 수출입 허가증 발급절차와 관련한 허가 요건, 필요서류, 등록 등의 세부사항 등은 내각 결의 제959호(https://lex.uz/docs/3435613)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2-Ⅷ-1〉 수출입 허가 및 계약 등을 규제받는 특정 품목

구분	품목	HS Code
1	군사장비 및 생산을 위한 특수 부품	8526(군사 전용), 8710, 8802(민간 헬리콥터, 민간 항공기 제외), 8803(민간 항공기 일부 제외), 8805(민간 항공기 제외) 0.9013 80.9014.9301, 9302 00 000 0.9305(무기 전용) 9306(군사 목적으로만)
2	방사성 폐기물인 우라늄 및 기타 방사성 물질	2612(우라늄 농축만 해당), 2844, 2845
3	방사성 물질로부터 사용된 도구	8401
4	귀금속과 그 금속으로 만든 기타 물품	7106(개인이 채취한 차원의 은괴(주괴)는 제외), 7107-7111000000(개인이 추출한 차원의 금괴(주괴)는 제외), 7115

자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UP-5215)

3)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에 관한 통제배달

□ 상기 수출입의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1부(통제운송)에서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위원회는 최근의 마약류 밀수입 적발 동향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적극적인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127) 대통령령(UP-5215)

□ 우즈베키스탄은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의 국제적인 불법유통의 근절과 이러한 유통에 참여하는 자의 적발을 목적으로 외국의 세관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과의 합의 또는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통제배달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128)]

○ 세관통제하에 불법유통에 포함된 마약 및 향정신성 물품에 관한 관세영역으로의 반입 및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반출 또는 관세영역을 통한 통과를 허용함

○ 이러한 통제배달 방법은 무기 또는 범죄의 수단이 되는 다른 물품 또는 범죄를 통해 취득한 물품이나 이를 이용한 비합법적 행위가 밀수출입인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음

○ 통제배달 방법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관세위원회에서 내리며, 내린 결정에 관하여 관세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장에게 통보함

□ 한편 우즈베키스탄 또는 외국의 법원이 적발한 통제배달을 이용한 범죄에 관한 소송으로 몰수한 금전 및 재산을 매각하여 획득한 금전은 관세위원회 및 외국의 권한을 가지는 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에 배분됨[129)]

나. 대통령령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 우즈베키스탄은 「대외경제활동법」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외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의 특징 중 하나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이 없다는 점[130)]에 비춰볼 때, 대통령령에 의한 수출입 규제 대상 여부와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표 2-Ⅷ-2〉는 대통령령(UP-5286)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이 가능한 예외 품목을

128) 「관세법」 제407조
129) 「관세법」 제409조
130) 김한칠,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법제교류연구』, 09-17-3,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30., p. 32.

정리한 것임

○ 주로 농축산품, 기타 문화예술품이 해당하며, 모든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음

〈표 2-Ⅷ-2〉 대통령령에 의한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구분	품목	HS Code
1	가축, 가금류	0101 - 105(제외 010511, 0105940000), 0106 39 1000
2	육류 및 식용이 가능한 부속품(내장 등)	0201-0210(제외 0203, 0207, 당나귀, 노새 0205 00, 아래 코드로 분류되는 돼지, 당나귀, 노새, 말 0206 30 000 - 0206 80 910 0, 0206 90 910 0, 0208 10, 0208 50 000 0, 0208 90 700 0, 0209, 0210 11 - 0210 19, 0210 99 410 0, 0210 99 490 0, 0210 99 710 0, 0210 99 790, 0 0210 99 800 0)
3	곡물(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쌀, 메밀)	제10류 곡물의 품목들
4	밀가루, 가루	1101 00 - 1106(제외 1106 10 000 0)
5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폐기물, 절단 및 스크랩	3907 60
6	원피(비표준 포함), 아스트라한을 포함한 모피 원료(비표준 포함)	4101 - 4107, 4112 00 000 0 - 4114, 4301 - 4302
7	누에고치, 생비단사(풀지 않은)	5001 00 000 0, 5002 00 000 0
8	비철금속의 스크랩 및 폐기물	7404 00, 7602 00, 7802 00 000 0
		7902 00 000 0, 8002 00 000 0
		8101 97 000 0, 8102 97 000 0
		8103 30 000 0, 8104 20 000 0
		8105 30 000 0, 8106 00 100 0
		8107 30 000 0, 8108 30 000 0
		8109 30 000 0, 8110 20 000 0
		8111 00 190 0, 8112 13 000 0
		8112 22 000 0, 8112 92 210 1
		8112 92 210 9
9	예술적·역사적, 과학적 또는 기타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유물(그림, 조각 등) (문화부의 결정에 따름)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의 품목들

자료: 대통령령(UP-5286)

2. 무역구제제도

□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는 특별관세로 규정하는 보호조치와 덤핑방지관세 그리고 상계관세로 구분할 수 있음

○ 2003년 12월 11일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을 제정·공포함

□ 우리나라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 조사 총 1건에 그침

○ 중량 5톤 이하 화물차(HS Code 8704.31)에 대한 2015년 6월 11일 반덤핑 조사를 개시, 2016년 6월 조사 종료한 바 있음[131]

가. 보호조치

□ 보호조치란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한 수입제한(수입 할당제), 수입관세를 초과하여 징수되는 특별관세 또는 그 밖의 물품수입의 증가 제한을 위한 조치의 형태로 적용되는 물품수입 증가 제한에 따른 조치를 말함[132]

○ 보호조치는 증가하는 물품수입으로 인한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규모 및 기간으로 적용됨

○ 물품수입에 대한 수량제한의 형태로 보호조치를 적용함으로써 물품수입량이 선행기간 동안의 평균 물품수입량 이하로 줄어들 수는 없음

- 다만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를 제거하여 이와 다른 물품수입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함

---

131)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tradeIncome/tradeIncomeDetail.do?pageIndex=1&tirId=ROIL2015090006&sContinent=TCOA&sNation=UZ&sSuitCouEtc=&sKeySel=&sKeyword=&sRestGubun=&sDtGb=&sStartDt=&sEndDt=&sItem=&recordCountPerPage=10&sOrder=1, 검색일자: 2021. 7. 5.

132)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6조

1) 보호조치 적용의 특성[133]

□ 다음의 경우 잠정보호조치는 잠정특별관세의 형태로 적용됨
  ○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조사 종결 전에 보호조치의 적용을 지체함으로써 경제부문이 추후에 제거하기 힘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예외적인 경우
  ○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그의 잠정 결론에 근거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최종결론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계속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조사 결과에 따라 증가하는 물품수입으로 인한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미 납부된 잠정특별관세액은 관세 환급을 위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특별관세 형태의 보호조치가 잠정특별관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 경우 그 차액은 관세 환급을 위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다만 특별관세 형태의 보호조치가 잠정특별관세보다 많은 금액으로 적용된 경우 차액은 납세자에게 부과되지 않음

2) 보호조치의 적용시한[134]

□ 보호조치의 적용시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재심사에 의해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적용시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잠정조치의 적용시한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잠정보호조치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적용시한은 보호조치의 총적용시한에 포함됨

---

133)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8조
134)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9조

나. 덤핑방지관세

□ 덤핑방지관세란 덤핑수입에 대하여 수입관세를 초과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말함[135]
  ○ 덤핑방지관세는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경제부분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규모 및 기간만큼 적용됨
  ○ 덤핑방지관세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세율은 덤핑마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덤핑방지관세는 1명 이상의 물품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음

□ 덤핑방지관세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마진이 수출가격의 2% 이상이거나 물품의 덤핑수입을 하는 때에 공급량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물품의 덤핑수입에 대하여 적용됨[136]
  ○ 덤핑마진은 물품의 수출가를 뺀 정상가격의 물품 수출가격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함
  ○ 덤핑마진은 물품의 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에서의 평균가격과의 비교에 근거하여 또는 물품의 정상가격과 특정 거래에서의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정해짐

1) 덤핑방지관세 적용의 특성[137]

□ 다음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잠정 결론서에 근거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조사 개시 후 60일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조사 종결 전에 획득한 정보가 덤핑가격에 따른 물품수입과 이로 인한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135)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0조
136)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1조
137)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3조

□ 조사 결과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미 납부된 잠정덤핑관세액은 관세 환급을 위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덤핑방지관세가 잠정덤핑관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 경우 그 차액은 관세 환급을 위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다만 덤핑방지관세가 잠정덤핑방지관세보다 많은 금액으로 적용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자에게 부과되지 않음

□ 조사 개시일 전에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생산된 물품에는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될 수 없으며, 덤핑방지관세는 세금 및 그 밖에 법이 정한 의무 지불금의 징수와는 무관하게 적용됨

2) 덤핑방지관세의 적용시한[138]

□ 덤핑방지관세의 적용시한은 덤핑방지관세의 적용 시작일 또는 물품의 덤핑수입이나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마지막 재심사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덤핑방지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시작된 재심사 중에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덤핑방지관세의 효력을 정지하는 때에 물품의 덤핑수입 및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지속되거나 재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이러한 경우 덤핑방지관세는 재심사의 근거가 되는 재조사에서 결과를 얻기까지 계속해서 적용됨

□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재조사는 재조사 개시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종결되어야 함

---

138)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4조

○ 덤핑방지관세의 재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재조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발의나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자가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출한 이후에 실시됨

□ 덤핑방지관세 적용의 지속 또는 덤핑방지관세율 재심사의 필요성은 재조사의 결과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결론서에 근거하여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함

○ 상기 기간은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결정에 따라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고 잠정덤핑방지관세는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짐

다. 상계관세

□ 상계관세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관세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는 관세를 말함

○ 상계관세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이 경제부문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결정에 따라 적용됨

1) 상계관세 적용의 특성[139]

□ 다음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잠정 결론서에 근거하여 잠정상계관세의 적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조사 개시 후 60일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경우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조사 종결 전에 획득한 정보가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이로 인한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139)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9조

□ 조사 결과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납부된 잠정상계관세액은 관세 환급을 위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상계관세가 잠정상계관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 경우 그 차액은 관세 환급을 위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함

○ 다만 상계관세가 잠정상계관세보다 많은 금액으로 적용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자에게 부과되지 않음

□ 자유롭게 유통되도록 출고된 물품에는 조사 개시일 전까지 상계관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계관세는 세금 및 그 밖에 법이 정한 의무 지불금의 징수와는 무관하게 적용됨

2) 상계관세의 적용시한[140]

□ 상계관세의의 적용시한은 상계관세의 적용 시작일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 및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마지막 재심사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상계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시작된 재심사 중에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상계관세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 및 경제부문의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가 지속되거나 재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이러한 경우 상계관세는 재심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재조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적용됨

□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재조사는 재조사 개시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

---

140) 「보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제19조

○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재조사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발의나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자가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출한 이후에 실시됨

□ 상계관세의 적용 지속 또는 상계관세율 재검토의 필요성은 재조사 결과에 따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결론서에 근거하여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정함

○ 잠정덤핑방지관세는 4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짐

3. 주요 인증제도

가.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WTO 미가입국으로 TBT 및 SPS 등의 전반적인 수입규제 동향에 대한 정보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진출 시 각종 인증절차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함

○ 특히 WTO 회원국이 아닌 Observer로서 WTO에 무역기술장벽(TBT) 내용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WTO TBT 협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또한 개별 인증마다 발급 기관이 모두 상이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매건마다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는 수입통관절차상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조사됨

□ 본 장에서는 주요 인증제도를 필수 인증제도인 표준청(Uzstandard) 인증과 적합성 인증(GOST UZ), 위생인증과 라벨링으로 한정하여 조사함

○ 전반적인 인증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웹사이트(https://lex.uz/docs/4524518)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 표준청(Uzstandard) 인증

□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소비재 및 모든 식품류에 대해 수입신고 시 표준청(Uzstandard)의 품질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함[141]

○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수입물품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각 분야별 관련 정부기관에서 담당함

□ 이에 따라 관세위원회에서도 77개 분류의 의무 인증이 필요한 수입물품 목록을 공지하고 있음[142]

〈표 2-Ⅷ-3〉 의무 인증 대상 물품 목록

번호	대상 물품
1	Meat and meat offal, including packaged
2	Fish and crustaceans, mollusk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3	Dairy products (except milk harvested); eggs of birds (except eggs for incubation); natural honey; food products of animal origin (for human consumption only)
4	Intestines, blisters and stomachs of animals (except fish), whole or in pieces,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5	Vegetables (with the exception of seed material) and some edible roots and tubers
6	Edible fruits and nuts; rind and roots of citrus or melons
7	Coffee, tea and spices
8	Cereals

141) 「인증절차 향상과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에 관한 추가조치 법률」 부속조항 제1조
142) 관세위원회, https://bojxona.uz/en/lists/view/188, 검색일자: 2021. 7. 7.

〈표 2-Ⅷ-3〉의 계속

번호	대상 물품
9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 inulin; wheat gluten
10	Peanuts, not fried or not cooked in any other way, peeled or peeled, crushed or not crushed
11	Vegetable juices and extracts; pectic substances, pectinates and pectates; agar-agar and thickeners of vegetable origin, modified or not modified
12	Fats and oils of animal or vegetable origin, their cleavage products, cook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3	Prepared products from meat, fish or crustacean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4	Sugar and sugar confectionery
15	Cocoa and confectionery products
16	Prepared cereal products, flour, starch or milk, flour confectionery
17	Products of processing vegetables, fruits, nuts and other parts of plants
18	Different food products
19	Alcoholic and non-alcoholic beverages and vinegar
20	Food, culinary products and semi-finished products manufactured by catering enterprises for sale to the population through the trading network
21	Tobacco and industrial tobacco substitutes
22	Salt (for edible salt only)
23	Quartz, marble, granite, gravel, cement, asbestos
24	Mineral fuel, oil and their distillation products;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25	Fire extinguishing powders (based on sodium bicarbonate)
26	Acyclic and cyclic hydrocarbons (only for products used as fuel)
27	Sulfonamides, provitamins, vitamins, hormones, glycosides and vegetable alkaloids, antibiotics
28	Pharmaceutical products (with the exception of glands and organs removed from the human and animal organism and intended for transplantation)
29	Fertilizers
30	Paints and varnishes (only fire retardant)
31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oducts
32	Soaps, organic surfactants, detergents, lubricants, artificial and ready-made waxes, cleaning or polishing compounds, candles and similar products, modeling pastes, plasticine, “dental wax” and gypsum-based dental compositions

〈표 2-Ⅷ-3〉의 계속

번호	대상 물품
33	Caseins,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albumin, albuminate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gelatin and gelatin derivatives; peptones and their derivatives; other protein substances and their derivatives; dextrins and other modified starches; enzymes; enzyme preparations
34	Explosives; fire cords and detonating cords; shock or detonating caps; fuses; electric detonators; pyrotechnic products; matches
35	Insecticides, rodenticides, fungicides, herbicides
36	Compositions and charges for fire extinguishers
37	Refractory cements
38	Brake fluids, antifreeze
39	Plastic products (pipes, tubes, fittings, floor coverings, plates, sheets, films, sanitary ware, packaging in contact with food, tableware and kitchenware for food)
40	Pneumatic pipes, hoses, tires and tires, rubber chambers, hygienic products, surgical gloves, swimming pool track; rubber sealing products for pneumatic brake systems of railway rolling stock (diaphragm, cuffs, collars, valve seals, gaskets, bushings)
41	Leather goods (boxing gloves, gear gloves and paws)
42	Rescue fire belts made of genuine leather
43	Wooden sleepers, impregnated; wooden bars for switches; chipboard and fiberboard, resin impregnated, plywood
44	Barrels, kegs, vats, tubs and other cooperage products, table and kitchen wooden accessories (in contact with food)
45	Products from natural cork
46	Hygiene paper products, paper and cardboard used for filtering and packaging food products, tissue paper, wallpaper, paper dishes for food
47	Notebooks, diaries, albums (notebooks) for drawing
48	Cotton fiber, cotton fiber fabrics
49	Cotton wool made of textile materials and articles thereof for hygienic purposes and in medicine
50	Ropes (only used for fireman's insurance)
51	Linoleum, textile-based flooring
52	Pressure fire hoses
53	Knitted or crocheted clothing (children's range)
54	Professional clothing for firefighters

〈표 2-Ⅷ-3〉의 계속

번호	대상 물품
55	Clothing (except knitted), machine-made and hand-knitted (assortment for children)
56	Packing bags and bags (for food only) (except for used ones)
57	Rescue fire belts of textile material, corner flags (sports)
58	Footwear and similar products (children's assortment and boxing shoes) (ready-made shoes only)
59	Fireman helmets and helmets Sports hats
60	Panels, plates, tiles agglomerated with mineral binders, gypsum plates and panels, products from cement, concrete and asbestos cement, brake linings, concrete sleepers and reinforced concrete switch bars
61	Ceramic products (bricks, blocks, plates, ceramic pipes, tiles for floors and furnaces, ceramic laboratory ware, bathtubs, sinks, toilet bowls, tableware and kitchenware)
62	Safety glass for motor vehicles, glass packaging for food and medicine packaging, tableware and kitchenware, glassware for laboratory, hygienic and pharmaceutical purposes
63	Sheet piling of ferrous metals, drilled or non-drilled, perforated or non-perforated, solid or made of prefabricated elements; corners, shaped and special profiles welded, of ferrous metals;
64	Fire carbines
65	Copper products (household appliances for cooking, table and kitchen products for cooking and eating)
66	Connection heads for fire fighting equipment
67	Aluminum table and kitchen for cooking and eating (except for scouring cleaning kitchen utensils, pads for cleaning or polishing, gloves and similar products)
68	Cutlery, spoons and forks, kitchen sets and other table and kitchen appliances
69	Steam boiler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urbojet turbines, power plants, liquid and air pumps, compressors, fans and hoods, air conditioning systems, furnace burners, industrial or laboratory furnaces and chambers, refrigerators and freezers, sterilizers, distillers, centrifuges, dishwashers (with the exception of used ones and used on ships and civil aviation), equipment for weighing goods, hoists, hoists and hoists, cranes lifting nye different types of lift trucks, machines and devices for the movement of goods, agricultural machines, road construction equipment, installations and devices for agriculture, livestock and cooking, weaving machines, duplicating machines, Machines trading

〈표 2-Ⅷ-3〉의 계속

번호	대상 물품
70	Cash registers (electronic counting machines with built-in printer and cash registers)
71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engines (except for civil aviation) and alternators, batteries, furnaces and industrial chambers, electrical appliances, electric water heaters; sound recording and reproducing equipment, equipment for recording and reproducing television images and sound, electronic lamps and tubes, incandescent lamps (over 12 W), insulated wires, insulating fittings, technical telecommunications, including terminal (terminal) equipment, as well as technical (hardware and software means ensuring the performance of functions of the system of operational-search measures in the equipment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s; means of technical and cryptographic protection of information used for sports purposes
72	Land vehicles (tractors, vehicles, bicycles, motorcycles, mopeds, carriages, trailers and semi-trailers)
73	Optical,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except for spare parts, consumables and control materials); measuring and control devices
74	Weapons and ammunition
75	Furniture (with the exception of furniture made to individual orders); lamps and lighting equipmen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76	Toys, games for children, checkers, chess, sports equipment
77	Training dummy, feminine hygiene pads and tampons, baby diapers and similar articles of any material

자료: 관세위원회, https://bojxona.uz/en/lists/view/188, 검색일자: 2021. 7. 19.

1) 표준청(Uzstandard) 인증품목

□ 표준청(Uzstandard) 인증이 적용되는 품목은 표준청에서 정하며, 주로 소비재 및 식품으로 다음과 같음

○ 모든 종류의 육류제품

○ 생선, 연체동물, 갑각류와 다른 무척추동물
○ 우유, 계란 및 동물 관련 제품
○ 동물의 내장(모든 형태)
○ 야채와 여러 가지 식용뿌리 또는 구근
○ 과일과 호두, 귤과 참외의 껍질과 뿌리
○ 커피, 차, 양념
○ 곡물, 제분제품(맥아, 전분, 이눌린, 밀가루 글루텐)
○ 채유종자 및 열매(기타 곡물 및 열매, 의약품용 식물, 기술 분야용 식물, 밀짚 등)
○ 주스, 추출물(펙틴화물, 한천, 실물보강제)
○ 동물과 식물의 기름과 기름화물
○ 고기, 생선, 연체동물, 무척추동물의 완성품
○ 사탕과 사탕과자
○ 코코아와 과자류
○ 곡물, 가루, 전분과 우유 완제품, 가루과자류
○ 야채, 과일, 호두와 다른 식물의 완제품
○ 기타 조제 식품
○ 알콜성 및 무알콜성 음료, 식초
○ 담배와 그의 대체물
○ 식용소금

□ 상기 품목 외에도 인증이 지정되는 품목의 변동 및 세부사항은 표준청 웹사이트(http://www.standart.uz)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표준청(Uzstandard) 인증절차

□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d) 인증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획득할 수 있으며,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음

○ 인증 신청서, 품목 설명서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조사, 실험
○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 선언
○ 인증서 발급 및 국가 등록

□ 상기 관련 서류양식 및 정보는 표준청 등의 해당 기관 방문 및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함
○ 홈페이지: www.standart.uz
○ e-mail: uzst@standart.uz

3) 표준청(Uzstandard) 인증 신청방법

□ 표준청(Uzstandard) 인증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d)에서 획득할 수 있음
○ 기업정보
○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 품목설명서(HS Code, 기술 특징 포함)

□ 인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식품 인증서의 경우 신청 후 5~15일 정도임

다. 적합성 인증(GOST UZ)[143]

□ 우즈베키스탄은 필수 인증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 인증인 GOST UZ 인증을 취득하거나 인증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GOST UZ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하는 기술표준 인증서로 CIS 회원국에서 유지 및 관리하는 기술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나타내는 인증임

143) CERINS 컨설팅, http://www.cerins.net/gost-uz/, 검색일자: 2021. 7. 12.

- 국가기술표준규격인 GOST(ГОСТ)는 러시아(GOST R)를 비롯한 CIS 회원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규격임

○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안 관세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CIS 회원국 중 하나로 TRCU(EAC) 인증서의 효력이 없고 기존의 GOST UZ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1) GOST UZ 인증절차

□ GOST UZ 인증절차는 해당 규정에 따라 강제인증품목목록에 해당되는 물품과 인증선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구분됨[144)]

○ 강제인증품목목록(No.122, 28.04.2011)에 해당되는 물품은 승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GOST UZ 인증을 받음

○ 인증선언에 해당되는 물품은 "Приказ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YACMC Узстандарт(Order of General Director of Uzstandard)" No.83, 04.03.2005에 따름

2) GOST UZ 인증의 종류

□ GOST UZ 인증은 제품군과 세부사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GOST UZ CoC)과 적합성 선언(GOST UZ DoC)으로 구분됨

○ 적합성 인증(GOST UZ Certificate of Compliance)은 내각 결정에 의해 강제 적합성 인증품목[145)] 및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음

○ 적합성 선언(GOST UZ Declaration of Compliance)은 몇몇 품목의 경우 적합성 인증대상인 경우가 있으며 리스트 상(*) 마크가 되어 있는 품목으로 양해각서에서 상호인정합의에 포함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이 해당됨

---

144)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No. 318, 06.07.2004

145) "Постановление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Resolution of the Cabinet of Ministers)" No. 122, 28.04.2011

3) GOST UZ 인증 신청방법

□ 적합성 인증(GOST UZ CoC)은 OECD 회원국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이 있을 경우 효력이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우즈베키스탄 표준청(Uzstandard)에서 획득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 제품 정보가 명시된 라벨(label) 샘플(상품 정보)
○ 선적서류(선하증권, 송장, 인보이스)
○ 제품과 관련된 규제 문서 사본(가능한 경우)
○ 위생증명서 사본(가능한 경우)

4) GOST UZ 인증의 유효기간

□ GOST UZ 인증의 유효기간은 계약 목적에 따라 One-shipment와 Serial 인증으로 구분됨

가) One-shipment 인증

□ One-shipment 인증은 단발성(일회성) 계약에 대한 인증에 적합하며, 해당 인증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등록된 현지법인, 지사, 수입업자 또는 딜러와 실질적 수출업자(제조업체) 간 계약서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일회성 인증서이므로 인증 시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함

○ One-shipment 인증서는 선적서류 및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만큼 유효하며, One-shipment 인증은 제품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 세관으로부터 확인이 된 후에서야 진행이 가능함

나) Serial 인증

□ Serial 인증은 최대 3년까지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인증이므로, 계속적인 수출이 예상되거나 다수의 딜러/수입업자와의 계약을 예상할 때 적합함

○ 다만 해당 인증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납품될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인증서인 만큼 해당 제조업체의 QMS(e.g., ISO certificate)와 매년에 걸친 사후심사가 요구되며, 사후심사 중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서는 취소됨

라. 위생인증

□ 우즈베키스탄 내 생산 및 수입되는 식품 및 소비재에 대하여 자국 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인증, 표준화, 기술규정에 적합한지를 인증함

□ 위생인증은 필수인증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를 통해 표준 심의 절차(규격인증, 안전증명 등)를 거치며, 우즈베키스탄 「위생검역법」에 부합함을 인증함

○ 위생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 및 소비재를 우즈베키스탄 공식 인증기관인 표준청과 국제표준인 ISO/IEC 17025-2007에 부합해야 함

○ 동·식물과 관련된 위생증명서는 수의학 감독 지방 기관이나 국가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함

○ 국내에서 생산 및 수입한 제품의 위생인증은 독성원소, 중금속, 잔류 농약, 곰팡이, 파튤린, 니트로사민, 기생충, 방사선 등을 세균검사를 통해 제품이 안전한지 여부를 테스트함

1) 의약품 및 의료기기[146]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됨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인증 및 등록은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함

□ 위생증명서는 인증절차 규정[147]에 따라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검역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됨

○ 〈표 2-Ⅷ-4〉는 위생증명서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리한 것임

〈표 2-Ⅷ-4〉 위생증명서의 발급절차 및 제출서류

발급절차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 신청서와 같이 접수된 서류 검토 - 제품 검사 계획 수립 -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계약 작성 - 샘플 선택 및 실험실 테스트 수행(세균, 독성, 잔류농약, 파툴린, 니트로사민, 기생충, 방사능 검사 등) - 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및 발급	- 우즈베키스탄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에 대해 나타낸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자료: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 「K-방역 해외조달시장 동향 우즈베키스탄 의료·방역」, 『K-방역 해외조달시장 동향』, 21-028, 2021. 3., p. 5.

146) 제약산업정보포털,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linkId=48761760&menuId=MENU01834&maxIndex=00487617639998&minIndex=001383903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검색일자: 2021. 7. 12.

147) 2004.7.6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절차 규정

□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함

○ 다만 부정적 검사 결과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불허된 경우 이를 신청자에 서면 통보하게 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한편 2015년 5월 한-우즈베키스탄 간 보건의료협력약정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인허가 시 임상시험 절차가 면제되며, 등록 검토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됨[148]

○ 등록비용은 2천~3천달러이고 유효기간은 5년임

○ 요구서류는 등록신청서, 제품개요서,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임상 및 기술 실험에 관한 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 제조사 정보(모든 서류 러시아어 공증 필요)임

○ 직접 등록 또는 에이전시를 통한 대리등록이 가능함

2) 식품

□ 식품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위생기준」 및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함[149]

○ 해당 품목에 대한 필수 위생 인증(Sanitary-epidemiological conclusion)과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필요 여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라벨링 대상 수입소비재 품목의 수입이나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어로 인쇄된 상품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함[150]

○ 식품의 명칭

○ 식품의 목적(유아용 제품 및 다이어트 제품)

---

148) 보건복지부, 「한국 의료인·의약품·의료기기, 우즈베키스탄 진출 문 열려」, 보도자료, 2015. 5. 28.
149) 「식품 안전에 대한 위생기준」 제2.5조
150) 「식품 안전에 대한 위생기준」 제2.9조

○ 제조업체의 명칭
○ 상표(해당되는 경우)
○ 식품첨가물을 포함한 식품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
○ 영양 및 등급
○ 보관방법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사용 방법(반제품, 유아용 및 다이어트 등의 특수 제품)
○ 중량
○ 규범적 또는 기술적 문서(normative or technical documentation)

□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11월 10일 자로 식품 라벨에 소금, 설탕, 지방 함량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 라벨 부착이 시행됨[151)]

○ 새로운 라벨 부착은 수입식품 및 국내 생산식품에 모두 적용되며 이행기간에 따라 1단계에서 2단계로 이행될 예정임
  - 1단계: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금, 설탕, 지방 및 기타 유해 첨가물 함량에 따른 색상별 라벨링이 도입되어 이를 반영한 식품 라벨 부착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교육·체육·의료기관에서는 신규 라벨(안전마크)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통상 법규 위반으로 간주
  - 2단계: 2025년 1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우즈베키스탄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새로운 라벨 부착 의무화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식품의 적절한 소금, 설탕, 지방의 함유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일반 규제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알려짐

151) *Uzdaily,* "Food labeling is being introduced in Uzbekistan," 2020. 11. 11, https://www.uzdaily.uz/en/post/61515, 검색일자: 2021. 7. 16.

마. 라벨링

□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 결의(PP-1913)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수입품에 대한 근절 강화 조치」에 따라 라벨링 대상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이는 라벨링 대상 수입소비재 품목의 수입이나 판매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라벨링 없이 국내 판매를 금지함

□ 세관 수속은 물품 선별 검사과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라벨링 표기 내용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어 라벨이 없을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능함

○ 다만 개인이나 법인(외국인 포함)이 개인 용도나 상업적 활동과는 관계없이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우즈베키스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의 외교사절단이나 외교관, 국가 간 기구 및 국제기구 또는 이와 관련된 인물의 공식적(또는 사무적) 용도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
- 전시회의 견본이나 실험 견본 또는 마케팅 견본을 위해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한편 2019년 10월 표준청은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전보다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152)]

○ 해당 품목은 보일러 외 중앙난방 보일러, 저장온수기, 진공청소기, 전기모터가 내장된 가정용 전기기계, 레이저 다이오드를 포함하는 발광다이오드(LED), 기타 램프 및 조명장비, 백열램프용으로 설계된 기타 장치 등임

○ 한편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진행한 바 있음

---

152)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상호협력 다각화로 수출애로 선제 대응」, 보도자료, 2019. 11. 27.

Ⅸ. 행정구제제도

1.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세관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행정책임법」을 통해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를 보장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행정책임법」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와 세관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제기)의 규정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함

○ 개정 전 「관세법」(2010. 9. 18.)의 경우 제10부에서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의 보장 및 소송의 심리, 세관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 규정 등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 전반을 다루었으나, 개정 후 「관세법」(2019. 10. 13.)은 해당 파트가 제외되었고 「행정책임법」을 따름

2. 행정구제제도

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의 보장

1) 물품 및 운송수단, 문서 등의 압류

□ 세관감독, 세관검사에서 발견된 무기 또는 법 위반의 직접적인 대상물이 되는 물품, 운송수단, 문서 및 그 밖의 문서는 증인의 출석하에 세관공무원이 압류할 수 있음

○ 물품, 운송수단 및 그 밖의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이것의 사용 및 처분은 금지되고 이것의 보존성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됨

2) 세관검사 및 전문가의 참여

□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은 증거 발견과 그것의 확인, 사건에 있어 의의를 가지는 그 밖의 정황의 판명을 위하여 물품 및 운송수단, 문서 등에 대해 세관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가짐

□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중에 있는 때에 세관공무원의 명령으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구할 수 있음

○ 또한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수사 중인 세관공무원은 명령에 근거하여 참고인의 입회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참여하에 물품 및 그 밖의 물품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집행에 참여하는 자 및 소송 비용

□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의 집행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그의 대리인, 변호사, 감정인, 전문가, 통역, 증인, 참고인이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세관공무원, 감정인, 전문가, 통역, 참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된 경우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을 집행할 수 없으며 감정인, 전문가, 통역, 참고인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 세관공무원, 감정인, 전문가, 통역, 참고인은 자격 포기를 선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피고인, 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자의 제척을 선언할 수 있음

□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 비용은 벌금 처분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부담함

○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라 다수의 자에게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건을 심리한 세관공무원은 각각에게 부담되는 비용을 정함

○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이미 발생된 비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어야 함

나. 세관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제기)

1)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명령의 공소 제기(이의제기)

□ 행정(「관세법」) 위반의 경우 결정에 대해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음[153]

□ 행정(「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명령은 상급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 소재지의 법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소 제기될 수 있음[154]

○ 행정(「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명령을 내린 세관을 통하여 제기된 이의는 3일 안에 각각 상급 세관 또는 법원으로 이송됨

□ 행정(「관세법」) 위반의 경우 결정에 대한 항소의 기한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155]

□ 정해진 기간 내의 이의제기 또는 항소제기는 법으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이의 또는 항소 심리전까지 처분 적용에 관한 명령의 이행을 일시 정지시킴[156]

---

153) 「행정책임법」 제314조
154) 「행정책임법」 제315조
155) 「행정책임법」 제316조
156) 「행정책임법」 제318조

2) 세관의 결정

□ 행정(「관세법」) 위반의 경우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에 따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검찰의 공소를 심의하는 때에 다음과 같은 결정 중 하나를 내림[157]

○ 명령서는 수정하지 않고 이의 또는 항소장은 통지하지 않고 둠

○ 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새로 심의하기 위하여 이송함

○ 명령을 취소하고 소송절차를 중단함

○ 이 법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분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고 변경함

□ 명령서 사본은 3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자에게 발송되며, 항소장 심리 결과에 관하여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에 통보함

3) 「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 중지 및 명령 취소의 결과

□ 행정(「관세법」) 위반에 관한 소송절차 중지 명령의 취소는 징수된 금전, 몰수·압수된 물건의 반환과 이미 채택된 명령과 관련한 그 밖의 제한의 취소를 초래함

□ 물건을 반환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보상하고 영업용인 경우에는 손실된 피해를 보상함

○ 불법 행정 체포(illegal administrative arrest)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157) 「행정책임법」 제321조

X. 벌칙

1. 개요

□ 우즈베키스탄은 「관세법」에서 벌칙 관련 파트(Part)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일부 조항과 「행정책임법」에서 관세행정벌을 규정함

○ 「관세법」 제412조(「관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에 따라 「관세법」을 위반한 자는 규정된 방식으로 책임져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음

□ 본 장에서는 「관세법」의 일부 조항과 「행정책임법」의 관세행정벌 관련 규정으로 조사 범위를 한정함

○ 개정 전 「관세법」(2010. 9. 18.)의 경우 제9부에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제11부에서 과태료 부과 및 몰수 명령의 이행 등의 처분 명령의 이행 전반을 다루었으나, 개정 후 「관세법」(2019. 10. 13.)은 해당 파트가 제외되었고 「행정책임법」을 따름

□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관세법」 위반에 대해 주로 벌금과 몰수의 처분이 적용되며, 「행정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처분 명령의 이행 절차를 따름

2. 관세행정벌의 종류 및 처분의 이행

가. 관세법상 규정된 관세행정벌

1) 자국 통화 및 외화의 불법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

□ 우즈베키스탄 통화 및 외화의 불법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의 적발 시 세관은 해당 현금을 압수함[158]

○ 세관은 해당 자국 통화 및 외화의 불법 수출입에 관한 정보를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함

2) 관세채무의 납부기한 위반 및 기타 납부의무 위반

□ 관세채무의 납부기한 위반 및 기타 납부의무 위반 시 납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관세채무 금액의 0.033%의 벌금을 부과함[159]

○ 다만 벌금은 총미납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행정책임법상 규정된 관세행정벌

□ 관세행정벌은 죄목에 따라 몰수형 또는 몰수형 및 벌금형이 부과되며, 형량은 국민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규정함

158) 「관세법」 제242조
159) 「관세법」 제349조

〈표 2-X-1〉「행정책임법」상 규정된 관세행정벌

조항	죄목	형량
제166조	라벨링이 없는 물품의 판매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15배
제184조	종교적인 내용의 자료를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제작, 보관,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행위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185조	발화(불꽃)제품의 불법거래(불법 생산, 제조, 보관, 운송, 선적, 수입 등)	몰수 및 벌금 - 최저임금의 5~20배
제185조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민사 및 서비스 무기로 유통이 금지된 물건의 불법 유통, 생산, 제조, 보관, 운송, 선적, 사용,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입하는 행위	몰수 및 벌금 - 최저임금의 5~10배
제227조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의 감독하에 있는 물품 및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기타 위반행위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3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5배
제227조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 외부로 물품 및 차량을 수출하려는 의도에 대해 통보하는 절차의 위반행위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3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5배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 외부로 물품 및 차량을 수출하려는 의도를 세관에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행위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7배
제227조	「관세법」 제224조(사고, 불가항력 또는 기타 화물운송을 방해하는 상황으로 인한 조치)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7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표 2-X-1〉의 계속

조항	죄목	형량
제227조	「관세법」 제218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물품 및 차량을 인도 장소에 제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7배
제227조	세관의 허가 없이 물품 및 차량을 멸실 또는 인도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물품 및 차량의 몰수 여부와 관계없이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물품 및 차량에 관한 문서의 세관의 허가 없이 인도, 분실 또는 미제출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7~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20배
제227조	세관의 허가 없이, 차량을 세관이 정하는 장소에 정차하지 않거나 세관에 있는 차량을 출발하는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3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5배
제227조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이 관리하는 선박 및 기타 부유식 장비에 계류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3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5배
제227조	통관절차 위반(통관 시작 및 완료, 장소, 시간 등의 절차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227조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 및 차량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 이러한 물품 및 차량의 상태 변경, 사용 및 처분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표 2-X-1〉의 계속

조항	죄목	형량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의 감독하에 있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운송·적재·적하·환적·파손된 포장의 보수·포장·재포장 또는 운송을 위한 인수·이러한 물품의 샘플 및 견본 채취·위에서 명시한 물품 및 운송수단이 소재할 수 있는 공간 및 그 밖의 장소를 은폐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7~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20배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 및 차량의 처분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0~3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0~50배
제227조	세관이 사용하는 식별장치의 변경, 폐기, 파손 또는 분실과 세관감독하에 있는 차량 및 적재물품의 불법적인 수하물 개봉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2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20~3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0~3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0~50배
제227조	물품 및 차량 신고 절차의 위반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7배
	정해진 기간 내 물품 및 차량, 문서, 추가정보의 미제출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15배
제227조	세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영토 및 건물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 방해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227조	「관세법」 제218조에 따른 물품 및 차량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0배

〈표 2-X-1〉의 계속

조항	죄목	형량
제227조	물품을 보관 및 운영 요건을 위반한 경우(다만 제227조, 제227조4, 제227조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20배
제227조	물품 가공 절차의 위반(가공 기간, 가공 생산품의 생산량, 가공 절차에 관한 요건, 제한 및 조건을 포함하여 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가공생산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는 행위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제227조	관세자유구역 및 보세창고에서 생산 활동 및 그 밖의 영리 활동 실시 절차의 위반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7~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20배
제227조	반출이 의무사항인 경우 이전에 반입되었던 물품 및 운송수단을 정해진 기간 안에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반출이 의무사항인 경우 반출하지 않은 사유로 행정처벌을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이전에 반출되었던 물품 및 운송수단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몰수

〈표 2-X-1〉의 계속

조항	죄목	형량
	이전에 반출한 물품 및 차량(반환이 의무적인 경우) 내에 정해진 기간 내에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제227조	「관세법」 제19장(폐기)에 따른 물품 폐기, 물품 폐기의 결과 형성된 폐기물을 해당 관세체제하에 두는 것에 대한 정해진 요건, 제한 및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제227조	관세체제의 제한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체제에 맞지 않는 물품 및 운송수단을 사용한 불법거래, 물품 및 운송수단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해당 관세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특정 관세체제에 따른 물품 및 운송수단의 처분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20~3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30~50배
제227조	물품을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경제정책 조치 및 그 밖의 제한사항의 적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15~30배

〈표 2-X-1〉의 계속

조항	죄목	형량
제227조	비상업적 목적의 물품으로 가장하여 실제 상업 목적으로 통관하는 행위(다만 제227조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10~15배
제227조	세관이 정한 장소 외 또는 정해진 통관 시간 외에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여 물품 및 운송수단을 이동하는 경우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감독 회피(즉 은닉처를 이용하거나 물품의 탐지를 어렵게 하거나 다른 물품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관세법」 제182조에 따라 문서 또는 식별장치를 거짓 사용하여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의 이동(다만 제227조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227조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하여 이동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즉 정확한 정보를 정해진 서면, 구두 상의 형식 또는 그 밖의 형식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물품, 물품의 관세체제 및 그 밖의 관세 목적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다만 제227조7, 제227조10, 제227조19, 제227조20, 제227조21, 제227조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관세법」 제37장(신고)에 따른 세관이 우즈베키스탄 관세선을 통과한 물품 이동, 물품을 요청한 관세체제에 두는 것, 관세 지불금의 금액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보로 부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표 2-X-1〉의 계속

조항	죄목	형량
제227조	관세 규칙을 위반하여 우즈베키스탄 관세영역에 반입된 물품 및 운송수단의 운송, 보관, 취득, 이것의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몰수 및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227조	관세 지불금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조건부로 인도된 물품 및 운송수단을 세관의 허가 없이 이러한 특혜가 제공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 및 처분하는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227조	세관신고서 또는 다른 문서에 관세 지불금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인하를 위한 근거가 되는 부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다만 제227조20, 제227조2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세관에 납부된 관세 지불금의 환급, 분할 지불 및 그 밖의 보상금의 수령 또는 합당한 근거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부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5~10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7~15배
제227조	「관세법」 제46장(관세 납부의 조건 및 절차)에 따른 관세 지불금 납부 기한의 위반	벌금 - 국민: 최저임금의 3~7배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제227조	통관대행업자로서의 활동 조건 위반	벌금 - 공무원: 최저임금의 5~10배
	「관세법」 제39장(신고인), 제40장(관세사), 제41장(통관전문가) 규정에 따른 상기 벌금 부과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벌금 - 공무원: 최저임금의 10~20배

자료: 「행정책임법」 각 조항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처분의 이행

1) 벌금 부과 결정의 이행

□ 범칙자는 벌금 부과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함[160]
  ○ 결정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것의 기각과 함께 이의 또는 항소의 포기에 관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
  ○ 16~18세에 해당되는 경우 부모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에게 벌금이 징수됨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행정적 위반에 대한 책임은 16세부터 적용받음[161]
  ○ 벌금은 위반 장소에서 부과되는 벌금을 제외하고는 범칙자가 우즈베키스탄 은행기관에 납부함

□ 처분 명령은 자발적 이행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강제 이행되어야 함[162]
  ○ 처분 명령을 내린 세관은 자율적으로 또는 금융기관, 은행 또는 그 밖의 신용대부기관에 명령 이행 촉구에 관한 통보를 발송하는 방법 또는 법이 정한 강제 절차에 따라 명령이 이행되도록 촉구함

□ 처분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처분 명령서는 이행에 관한 표시를 하여 세관 또는 법원에 반환됨[163]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 운송수단 및 그 밖의 처분의 보장을 위하여 압류된 물건을 판매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징수됨[164]

---

160) 「행정책임법」 제332조
161) 「행정책임법」 제13조
162) 「행정책임법」 제333조
163) 「행정책임법」 제335조
164) 「행정책임법」 제336조

○ 우즈베키스탄 내 상시거주지를 두지 아니한 자 또는 우즈베키스탄 내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몰수 명령의 이행

□ 몰수 명령이 내려진 물품, 운송수단 및 그 밖의 물품은 명령의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몰수됨[165]

○ 몰수는 물품, 운송수단 및 그 밖의 물품이 「관세법」을 위반한 자의 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하며, 또한 그 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짐

□ 범죄의 수단이거나 직접적인 대상이었던 몰수품의 판매 또는 파기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166]

165) 「행정책임법」 제337조
166) 「행정책임법」 제338조

제3편 수출입통관절차

I. 수입통관절차

1. 개요

가. 수입통관절차상 특징

□ 우즈베키스탄 수입통관절차는 다른 국가와 달리 임시통관을 거치는 완전통관과 일반적인 완전통관으로 이루어짐

○ 임시통관을 거치는 경우 관세 및 제세를 지불하지 않고 세관창고 내 보관이 가능하며, 수입자가 결정되었을 때 수입통관 또는 제3국으로의 수출통관 또는 반송도 가능함

□ 수입통관절차에 따른 코드는 크게 Import 70, Import 74, Import 40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관은 대부분의 수입화물에 대해 Import 70(74)으로 임시통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Import 40으로 완전통관을 시킴

○ 다만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물품 도착 전에 발행되었거나 인증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Import 40으로 완전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수입 서류 준비를 위해 Import 70(74)를 선행하는 이유는 영내 반입 후 특정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피하고 일반 터미널 내 보세창고의 보관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음

〈표 3-Ⅰ-1〉 수입통관절차에 따른 코드 분류

코드	명칭	내용
Import 70	임시 보관(Временное хранение)	수입 최초의 보세구역 입고 시 절차, 2개월 이내 보관 가능
Import 74	보세창고(Таможенный склад)	신청 시 2년까지 보관 가능, 수입 제세 지불
Import 40	수입(импорт)	일반 수입 (정상적인 관세 및 제세 지불)

자료: 관세위원회, http://fmc.uz/main.php?id=classrejim, 검색일자: 2021. 7.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3-Ⅰ-2〉는 임시통관을 거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정리한 것임

○ 일반적인 완전통관의 경우 3일 이내에 완료되고 있으나, 임시통관을 거치는 경우 통관 소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통관 관련 인건비를 포함한 통관 절차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짐

〈표 3-Ⅰ-2〉 임시통관을 거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

소요 기간	절차
1일	- 화물 도착
2일	- 선적서류 수령 - 인증서 발급서류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신청 (다만 인증서 발급 신청서는 화물 도착 전 완료되나, 운송장 사본 제출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물 도착 후 발급 진행 가능) - Import70(74) 면장 준비
3일	- Import70(74) 면장 세관 등록 (다만 인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 Import40으로 바로 등록 가능) - 공항창고에서 보세창고로 화물 이동
n일	- 인증서 발급에 n일 소요 - Import40 면장 준비, 등록, 화물 반출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가간담회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애로사항 및 유의사항

1) 애로사항

□ 우즈베키스탄 수입통관절차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인증(Cetification) 관련 문제를 꼽을 수 있음

○ 1) 우즈베키스탄은 수입화물이 도착한 후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사전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움

-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사전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면장에 간이 수입 인증 도장으로 대체하여 30일 이내에 해당 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을 하는 조건으로 선통관 및 화물 픽업이 가능함

○ 2) 개별 인증마다 발급 기관이 모두 상이하여 각기 다른 장소에서 통관에 필요한 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됨

- 해당 물품에 대해 필요한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수입통관은 발급 기한을 포함하여 소요됨

○ 3) 인증은 단기적으로 매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인증 발급 빈도를 단기적 성격인 매건마다에서 장기적 성격인 매년마다로 변경할 수 있음

□ 상기 인증 문제는 결국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길어지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게 함

○ Doing Business(2020)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유럽 및 중앙아시아나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수입통관과 서류검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표 3-Ⅰ-3〉 수입통관 시 소요 시간과 비용

(단위: 시간, 달러)

구분	우즈베키스탄	유럽 및 중앙아시아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
국경통관	111	20.4	8.5
통관비용[1)]	278	158.8	98.1
서류검사	150	23.4	3.4
서류비용[2)]	242	85.9	23.5

주: 1) 항구 또는 국경선에서 서류를 수령, 준비 및 제출, 통관과 검사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
2) 서류 수령, 준비, 작성, 제시, 제출까지의 과정

자료: World Bank, https://www.doingbusiness.org/en/data/exploreeconomies/uzbekistan#DB_tab, 검색일자: 2021. 7. 26.

□ 그 외에도 관세율 책정 시 송장(Invoice) 신고가격이 아닌 세관에 등록된 가격 기준은 세관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음

○ 해당 물품에 대해 세관에 등록된 최초 수입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짐

□ 한편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TSR(시베리아 횡단철도)과 TCR(중국 횡단철도)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된 육상 물류의 운송수단이 주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함

○ TSR과 TCR 운송의 중간 통로가 되는 카자흐스탄이 자국 내로 수입되는 화물이 아닌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오는 통과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도시에서 카자흐스탄 세관에 의해 통과 화물인 컨테이너를 개문하고 검사하는 과정에 화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는 등의 사건도 종종 발생함[167)]

167) Kotra 해외시장뉴스, 「[전문가 기고] 일대일로와 한-우즈베키스탄 물류 환경」, 2017. 12. 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987&searchNationCd=101095, 검색일자: 2021. 7. 26.

2) 유의사항

□ 우즈베키스탄은 이중내륙국이 갖는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수입화물의 대부분은 철도와 도로를 통한 육상 운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함

□ 트럭 또는 기차와 같이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보세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경유 또는 도착 국가 영내에서 세관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도착 전 경유 국가의 세관신고 내역은 반드시 최종 도착 후 세관신고 내역과 동일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철도 운송을 주로 하는 국가에서는 터미널(Station) 코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표 3-Ⅰ-4〉는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운송을 운영하는 국영회사(Uzbekistan Railway)에서 제공하는 터미널 코드를 정리한 것임

〈표 3-Ⅰ-4〉 우즈베키스탄의 터미널 코드

도시명	터미널 명칭	코드
Taytepa	Тайтепа	723206
Urgench	Ургенч	738305
Chukursay	Чукурсай	720000
Fergana2	Фергана2	742809
kakirite	Какир	742207
Bukhara-2	Бухара-2	730106
Margilan	Маргилан	742508
Samargand	Самарганд	727809
Sergeli	Сергели	723507
Akaltyn	Акалтын	724904
Assake	Ассаке	743407
Andijan	Андижан	743708

〈표 3-ㅣ-4〉의 계속

도시명	터미널 명칭	코드
Karaulbazar	Караулбазар	730303
Namangan	Наманган	741100
Raustan	Раустан	741007
Tinchlik	Тинчлик	731407
Nazarbek	Назарбек	722203
Galaba	Галаба	736403
Kengsoy	Кенгсой	732602
Kitab	Китаб	734107
Kokand-1	Коканд-1	740004
Navoi	Навои	731306
Tashkent	Ташкент	722400
Ulugbek	Улугбек	727902
Rakhimov	Рахимова	723704
Karshi	Карши	733104
Nukus	Нукус	739007
Ablyk	Аблык	722701

자료: Uzbekistan Railway, https://railway.uz/en/uslugi/gruzovye_perevozki/355/, 검색일자: 2021. 7. 30.

2. 수입통관절차

가. 수입신고

□ 신고인의 요건에 따라 수입신고는 우즈베키스탄의 법인 및 개인, 운송인 또는 통관 대행업자가 할 수 있음

○ 운송인은 영내 물품 및 운송수단 반입 시 세관에 통지해야 하며, 도착 전 30분 이내에 도착 통지((Notice of arrival)를 하여야 함
- 다만 우즈베키스탄을 경유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수입신고 시에는 「화물세관신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신고 양식을 사용하며, 전자신고 양식은 관세위원회 웹사이트(https://bojxona.uz/en/lists/view/13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도착통지서(D/O), B/L(Railway Bill 또는 Airway Bill)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송장(Invoice)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관세 감면 대상 품목인 경우 감면을 증명하는 서류
- 품질인증서
- OECD 회원국의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을 경우 우즈베키스탄 발급 서류 제출이 생략됨
- 회사등록 코드 사본
- 거래은행 계약 ID 번호
- 필요 시 해당 물품 공급 관련 대통령령, 내각령 등 관계 법령
- 필요 시 관련 정부 부처의 승인(과학기술위원회, 보건부 등)

□ 한편 간이 수입신고 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물품과 동시에 간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24시간 이내에 간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나. 물품 검사

□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면 물품 검사는 주로 실제 도착 물품과 송장(Invoice)상의 기재 물품과의 대조 작업으로 이루어짐[168]

○ 물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가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의 참여 없이 수행될 수 있음

□ 세관공무원은 물품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물품 검사 장소와 시간을 신고자에게 전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169]

○ 세관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는 물품 및 운송수단의 세관검사에 참석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170]

○ 물품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수행되고,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 따른 특수 보관조건의 물품 또는 반입금지 물품은 비디오 녹화 장비로 녹화를 수행해야 하며,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되어야 함[171]

○ 물품 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며, 검사 중 수량 및 성질 등의 물품 정보가 화물세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명시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검사증명서에 이를 반영해야 함[172]

○ 물품 검사 결과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173]

○ 물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고 물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174]

---

168) 「관세법」 제193조
169)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12조
170)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13조
171)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14조
172)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19조
173)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20조
174)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22조

□ 물품 검사에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은 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수량, 구성,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진위 여부 등의 물품에 대한 정보를 결정함[175]

○ 세관공무원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안전하고 물품 및 운송수단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함[176]

- 기술적 수단에는 X-ray, 금속 탐지기, 화폐 식별 수단, 귀금속 식별 수단, 약물 탐지 및 식별 수단 등이 있음

□ 물품 검사 과정을 통해 해당 제품의 라벨링 표기 내용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어 라벨이 없을 경우 수입통관이 불가능함

□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개인 수하물

○ 상원 의원 및 입법부의 의원, 내각 의원, 인권을 위한 승인된 사람의 개인 수하물 및 우즈베키스탄 외교 여권 소지자(이 사람들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세관국경을 넘는 경우)

○ 법에 따른 기타 공무원의 개인 수하물

○ 외국 군함(선박), 군용 및 군용 수송기, 자력으로 운용되는 군용 장비

다. 관세 납부

□ 수입신고 후 세관에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물품 반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물품 및 운송수단 반입 시 통관 비용은 해당 물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20%, 통관수수료 0.2%, 소비세(부과대상 품목인 경우)로 구성됨

175)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26조
176) 「물품 검사 및 샘플 채취에 관한 이행 지침」 제27조

□ 수입관세는 품목분류에 따라 0~100% 수준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이 대통령령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신 관세율을 확인해야 함

○ 관세부과의 기준을 송장(Invoice)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관에 등록된 최초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또한 관세 감면 대상 기계설비를 분할하여 신고할 경우 개별 부품의 HS 코드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적, 신고 시 확인이 필요함

라. 물품 반출

□ 수입물품이 검사대상이 아닌 경우 수입자는 관세 및 제세를 세관에 납부한 후 세관의 분출 확인을 거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관세 납부 후 통관이 완료되면 화물 분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한편 세관은 「관세법」 위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하고 확인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반출 후 세관감독을 수행할 권리가 있음[177]

○ 물품 반출 후 세관감독 수행 시 세관은 반복적인 물품 검사,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정보의 재확인, 각종 문서 및 정보의 확인을 할 수 있음

○ 동일한 계약에 대한 물품 반출 후 세관감독은 1회 이상 할 수 없으며, 반출 후 세관감독 및 추가 관세부과는 해당 물품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음

177) 「관세법」 제201조

3. 기타 통관절차

가. 국제 우편물 및 소포

□ 국제 우편물은 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따른 서류를 동봉해야 하며, 소포는 상업서류를 동봉해야 함[178]

□ 국제 우편물 및 소포의 통관은 세관감독하에 수취인 관할 세관에서 수행되며, 세관감독 없이 수취인에게 제공, 반출될 수 없음[179]

○ 국제 우편물의 통관은 관세위원회와 협의하여 우편 통신 분야의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결정한 장소에서 수행됨

○ 국제 소포의 통관은 우편 서비스 분야의 특별 승인 기관의 통지와 관세위원회가 결정한 장소에서 수행됨

□ 다음의 경우 국제 우편물 및 소포로 발송된 물품의 세관신고로 간주되며, 그 외의 경우 화물통관신고로 이루어짐[180]

○ 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따른 서류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및 법인에 국제 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최저임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

○ 상업서류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및 법인에 국제 소포 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최저임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 우편물 및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181]

---

178) 「관세법」 제165조
179) 「관세법」 제166조
180) 「관세법」 제167조
181) 「관세법」 제168조

○ 세관은 국제 우편물 및 소포 품목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물품이라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지, 엽서 등은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음

□ 국제 우편물 및 소포에 대한 관세 납부는 승인된 자가 납부하며, 납부금액 산정은 세관 담당자가 함[182)]

□ 국제 우편물 및 소포의 통관 면제는 대통령령(PP-3873) 「국제 우편, 소포 반입 관리를 위한 조치」에 따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적용됨

○ 개인의 경우 일반 우편은 100달러, EMS나 DHL과 같은 화물은 분기당 1천달러 내에서 통관이 면제됨

○ 법인의 경우 일반 우편, EMS, DHL 등에 상관없이 100달러까지 통관이 면제됨

나. 여행자 물품

□ 여행자 물품은 다음의 경우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183)]

○ 면세범위 내에서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발송한 국제 우편물 및 소포

○ 면세범위 내에서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운송하는 물품

○ 차량을 제외한 영주권 변경과 관련하여 세관국경을 넘어 이동한 개인의 재산

□ 대통령 결의(PP-3512) 「개인에 의해 관세국경을 통한 물품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운송수단별 입국 방법에 따라 면세가 적용됨

○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최대 미화 2천달러

○ 철도 및 하천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최대 미화 1천달러

182) 「관세법」 제169조
183) 「관세법」 제157조

○ 도로(보행) 검문소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 최대 미화 3백달러

□ 상기 해당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음

○ 다만 특정 유형의 물품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음

- 술: 최대 2리터 이하
- 담배: 궐련(Cigarette) 10갑 이하
- 향수: 상품종류별 3병씩 가능
- 귀금속 및 보석류: 총중량 65g 이하

□ 내각 결의 제463호 「개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따라 특정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통관을 허용함

○ 1인당 6개월에 각 품목별 1개 제품으로 한정하며, 20개 종류의 전자제품(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가스레인지, TV, 전자레인지, 오븐, 헤어드라이기, 프린터 및 복합기, 노트북 등)에 적용됨

○ 기타 유형의 물품은 1인당 1개월에 최대 2kg까지 적용되며, 총중량은 10kg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 및 제세가 부과되는 경우 여행자 물품의 납부금액 산정은 세관 담당자가 하며, 관세를 납부한 개인에게는 통관영수증 1부를 교부함

□ 여행자 물품의 신고는 면세통로(녹색) 또는 과세통로(적색)로 구분되는 이중통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184]

○ 관세 및 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할 경우 면세통로(녹색)로 통관함

○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휴대한 경우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통로(적색)로 통관함

○ 한편 16세 마만의 자가 운송하는 여행자 물품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함

184) 「관세법」 제162조

II. 수출통관절차

1. 개요

□ 수출은 우즈베키스탄 물품이 반환의무 없이 관세영역 밖으로 수출되는 제도로 수출자는 수출통관을 위해 관세납부 및 경제정책조치를 준수해야 함

○ 정상적인 운송 및 보관조건에서의 파손 또는 손실 등의 자연적 마모로 인한 물품 상태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와 동일한 상태로 관세영역으로부터 반출되어야 함[185]

□ 우즈베키스탄에서 물품의 수출은 수출자의 수출 계약에 따라 수행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송장에 따라 수출 계약 없이 수행됨

○ 수출 계약은 우즈베키스탄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물품 수출을 위한 계약으로 법령에 따른 계약을 말함

○ 수출 계약 없이 물품을 수출할 자격은 통화 통제 목적으로 수출 활동이 전자 시스템에 반영되고 수출자의 우즈베키스탄 은행 계좌로 100% 선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적용됨

□ 수출이 금지된 물품은 다음과 같음[186]

○ 폐기물

○ 전기, 물, 파이프라인(석유, 가스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품 및 연료

○ 소모품 및 소모품 견본, 원자재, 반제품, 음료, 알코올 및 담배 제품

○ 일회용품

---

185) 「관세법」 제30조
186) 「관세법」 제37조

□ 한편 2018년 7월 12일자 관세위원회 명령 470호 「과일 및 채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에 따름

○ 법인은 선지급 없이 물품을 수출하고 신용장 개설 및 상업적 위험에 대한 수출 계약을 보장받으며, 도매 거래 허가 없이 과일 및 채소를 수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수출되는 과일 및 채소는 「관세법」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검사의 대상이 아님

2. 수출통관절차

□ 수출신고 시에는 「화물세관신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수출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출계약서(교환계약 제외)
- 운송서류
- 송장(Invoice)
- 허가서류(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 서류)

□ 내각 결의 199호 「대외무역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개선 조치」에 따라 등록된 상기 수출 계약 정보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됨

○ 다만 국가기밀 관련 정보가 포함된 계약 및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미화 5천달러 이하의 물품은 제외됨

□ 수출신고 이후 수출항에 도착한 물품은 터미널 운영인의 화물 수령 통지 후에 물품을 운송수단에 적재함

3. 기타 통관절차

가. 국제 우편물 및 소포

□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영역에서 수출하는 국제 우편물은 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따른 서류를 동봉해야 하며, 소포는 상업서류를 동봉해야 함[187]

□ 다음의 경우 국제 우편물 및 소포로 발송된 물품의 세관신고로 간주되며, 그 외의 경우 화물통관신고로 해당 물품이 우편 기관으로 배송될 때 이루어짐[188]

○ 국제협약(만국우편연합)에 따른 서류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및 법인에 국제 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최저임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

○ 상업서류가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 및 법인에 국제 소포 우편으로 발송된 물품이 최저임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영역에서 수출하는 국제 우편물 및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는 해당 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189]

나. 여행자 물품

□ 대통령 결의(PP-3512) 「개인에 의해 관세국경을 통한 물품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출국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최대 미화 3천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됨

□ 2019년 1월 1일부터는 미화 5천달러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음[190]

---

187) 「관세법」 제165조
188) 「관세법」 제167조
189) 「관세법」 제168조

○ 다만 특정 유형의 물품을 개인이 수출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음
- 쌀: 총중량 3kg 이하
- 베이커리 제품: 총중량 5kg 이하
- 고기 및 식용 고기 부산물: 총중량 2kg 이하
- 식물성 오일: 총중량 2kg 이하
- 신선과일 및 채소, 포도, 멜론, 콩 및 말린 채소 및 과일: 총중량 40kg 이하

○ 미화 2천달러 상당의 외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의 특별 허가가 필요함

190) 관세위원회, https://bojxona.uz/en/lists/view/6, 검색일자: 2021. 7. 20.

참고문헌

김한칠,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법제교류연구』 09-17-3,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30.

보건복지부, 「한국 의료인·의약품·의료기기, 우즈베키스탄 진출 문 열려」, 보도자료, 2015. 5. 28.

산업통상자원부, 「우즈베키스탄과 기술규제 상호협력 다각화로 수출애로 선제 대응」, 보도자료, 2019. 11. 27.

서종원·예충열·이태형·이호·한은영·김용진·박민철, 『유라시아 국제운송로 물류여건 및 수요조사 분석』, 기본연구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6. 11.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 「K-방역 해외조달시장 동향 우즈베키스탄 의료·방역」, 『K-방역 해외조달시장 동향』, 21-028, 2021. 3.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Budget for citizens 2021*, 2020. 11. 30.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경제 브리프」 제191호, p. 4.

IMF, *Republic of Uzbekistan:2021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and Staff Report,* Country Report No.21/85, 2021. 4.

WTO·ITC·UNCTAD, *World Tariff Profiles 2021,* 2021.

World Bank, "The Logistics Performance Index and Its Indicators," 2018.

국토교통부 해외철도청보, http://www.kric.go.kr/jsp/industry/glp/country_MarketInDetail.jsp?menuId=M01040201&board_seq=8099&pageNo=1&q_region=A020150003&q_cnty=A010110131&q_cnty_name=&q_value=&q_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m.emerics.org/businessDetail.es?brdctsNo=315525&mid=a10400000000&systemcode=04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bukbang.go.kr/bukbang/info_data/pds/0001/?boardId=bbs_0000000000000013&mode=view&cntId=970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Text=%25EA%25B4%2580%25EC%2584%25B8&searchPageRowCnt=10&searchNtnlCls=3&searchNtnl=UZ&pageIndex=1&CTS_SEQ=37990&AST_SEQ=319&ETC=5
제약산업정보포털,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linkId=48761760&menuId=MENU01834&maxIndex=004876176399998&minIndex=0013839039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검색일자: 2021. 7. 12.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
한-우즈베키스탄 FTA 포털,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1/uz
CERINS 컨설팅, http://www.cerins.net/gost-uz/, 검색일자: 2021. 7. 12.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2987&searchNationCd=101095
Trade 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관세위원회, http://fmc.uz/main.php?id=classrejim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회, https://www.customs.uz
우즈베키스탄 관세정보포털, http://tarif.customs.uz
우즈베키스탄 정부 법령 사이트, https://lex.uz/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https://cbu.uz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 https://www.stat.uz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 http://invest.gov.uz

우즈베키스탄 표준청, http://www.standart.uz

Uzdaily, "Food labeling is being introduced in Uzbekistan," 2020. 11. 11, https://www.uzdaily.uz/en/post/61515, 검색일자: 2021. 7. 16.

_____, "What will change in tax policy in 2021?," 2021. 1. 1, https://www.uzdaily.uz/en/post/62808, 검색일자: 2021. 6. 25.

_____, "South Korea to expedit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with Uzbekistan," 2021. 1. 12, https://www.uzdaily.uz/en/post/62964

Uzbekistan Railway, https://railway.uz/en/uslugi/gruzovye_perevozki/355/

Uzbekexpertiza, http://verification.expertiza.uz

PwC, https://taxsummaries.pwc.com/republic-of-uzbekistan/corporate/other-taxes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uzbekistan

WTO, https://www.wto.org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

_____, https://www.doingbusiness.org/en/data/exploreeconomies/uzbekistan#DB_tab

관세연구 21-03
우즈베키스탄의 통관환경 연구

발 행 2020년 9월 30일
저 자 정재현 · 김미정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디자인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ISBN 979-11-6655-074-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관세연구 21-03

우즈베키스탄의 통관환경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

93320
9 791166 550744
ISBN 979-11-6655-074-4